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김은정 · 김명수 · 김윤명



녹색성장 연구 13-23-⑪

글로벌법제연구실 | 법제와 정책 연구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김은정 · 김명수 · 김윤명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the climate
change and the activation of creative economy

연구자 : 김은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Eun Jung

김명수(한국노동경영연구원 원장)

Kim, Myong Soo

김윤명(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Kim, Yun Myung

2013. 9. 30.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으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와 화산폭발로 인한 성층권 에어로졸의 증가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을 의미
- 특히 인류에 의한 환경파괴 중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온난화 문제 등이 심각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 각국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대응책임
 -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온실가스 감축)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에 직면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 산업

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및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행되고 또 고안되고 있는 다양한 협약과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계와 시장구조와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II. 주요 내용

- 연구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금융, 산업 세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현황과 법제 등을 분석
- 기업에 대한 책임을 외부, 즉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 시킴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치로서 기업의 영리성에 대한 극복 또는 영리성과의 조화를 도모
 - 이때 사회적 책임에 경제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포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행위준칙이며, 사회책임투자(SR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방법
- 우리나라 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제고를 위하여 영미회사법에서 도입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사회책임투자라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 사회책임투자란 통상의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사회책임투자는 종래 기업의 본질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로 회사법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쟁점이 좀 더 구체화, 행위규범화된 논의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하 ‘CERCLA’)는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시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사항까지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반하여 발생한 오염책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을 위한 검토 중임
- 기후환경의 변화를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은 기술개발을 통한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환경 기술, 에너지 기술 등은 많은 R&D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 주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후협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규제조약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전략의 지표 제시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전세계적인 이슈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창조경제의 다양한 전략방안에 있어 우리 기업,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책임을 외부, 즉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에 관한 원칙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자료 제시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대한 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책임을 위한 사회책임투자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제시
- 기후협약 관련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의 연구를 통한 체계정당성 확보에 기여

▶ 주제어 : 기후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투자, 환경금융, 환경기술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Climate change means a gradual change in climate due to natural and artificial causes. It also refers to significant changes or variations from the average state, which last over several decades or longer. Climate change pertains to the average climate variation in the entire nature, including effects due to natural causes such as greenhouse effect caused by human activities and increase in aerosol in the stratosphere caused by volcanic eruptions.
- In particular, among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effects by the human race, the issue of global warming is serious and is attributable to greenhouse gases.
 - Economic activities are foreseen to shrink following measures restricting the use of fossil fuel under UNFCCC or Kyoto Protocol.
- The creative economy advocated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can be said to mean an economic strategy for creating good jobs by strengthening the existing industries while creating new industries and markets through a bold paradigm shift based on creativity.

- An urgent and critical task for us is to establish reasonable countermeasures that can minimize the burden on the local industrie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ir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 as we try to reduce greenhouse gas while considering policies for steadily increasing efforts in relation to the global task of climate change.
-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develop countermeasures for promoting the growth of local industries and improvement of the local market structure by analyzing diverse agreements and institutions that are being enforced or devised to counter climate change.

II. Main Contents

- This research report will analyze the status and legal system in three sectors - business, finance, and industry - to revitalize the creative economy, together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 The research seeks to overcome or harmonize the profit-seeking nature or commerciality of businesses with the value of protecting investors by switching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onsibility to society.
- Here, responsibility to society includes the value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climate change.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a behavior guidelin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a business, wherea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is an investment approach that can promo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Detailed discussion is made on the principle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s well as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ntroduced in the law on profit-seeking companie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Korean businesses while promoting their growth.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s an approach to determining investment considering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environment, social contribution, and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ed by a business in addition to the usual financial indicators. Interest i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has been growing globally because the general public is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and economic polarization.
- The theory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has long been discussed in the domain of corporate law as a proposi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inherent nature of traditional businesses. More specific behavioral guidelines are discussed.
- The US Act on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CERCLA) imposes duties on the financial lender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risk of the borrowing

business at the time of examining its loan application and stipulates that the financial lender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for pollution caused by its failure to do so. Korea has also studie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 A strategic approach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can be developing nature- and environment- friendly polici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 Note, however, that technology needs to be developed mainly by advanced countries sinc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 and energy-related technologies incurs huge R&D cost.
- Therefore, this research reviews climate-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ie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echnologies. Specifically, this research intends to present indicators of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chemes to enhance technology transfer by examining local legal system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 This research also explores schemes for reinvigorating Korean businesses, finance, and industries among diverse strategic programs of the creative economy, which pursues economic growth amid the global issues of climate change attributable to global warming.

III. Expected Effects

- This research provides basic research data for presenting principles related to switching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for climate change or other environmental issues to their responsibility toward society.
- This research also presents schemes for improving the Korean legal system concerning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based on local businesses' responsibility of environment protection from climate change through research on legal systems in the USA, UK, and other major advanced countrie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Final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securing institutional justification (System-gerechtichkeit) through the study of technology transfer under climate conventions and legal system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Key Words** : climate chan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environment financing, environment- related technologies

목 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 2 장 기후변화와 기업 활성화	25
제 1 절 서 론	25
제 2 절 기후변화와 기업규제	27
1. 기업의 회사법상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27
2. Unocal 사례	36
3. 회사법상 환경보호 증진의무	39
제 3 절 기업환경원칙(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CEP’)	40
1. 기업환경 목표와 기업 행위	40
2. 기업환경원칙의 필요성	41
3. 기업환경원칙의 주요내용	46
4. 기업의 효과적인 환경관리	54
제 4 절 기업을 위한 국제환경규범	57
1. 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	58

2.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60
3.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ECO-Audit)	61
4. ISO 26000	62
5. 주요국의 입법화 현황	63
제 5 절 기후변화대응방안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69
1. 기업환경원칙의 필요성	69
2. 기업의 환경 리더십	70
3.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규제와 영리성	73
4. 기후변화와 기업 활성화	74
제 3 장 기후변화와 금융 활성화	77
제 1 절 녹색금융의 의의	77
1. 환경금융의 필요성	77
2. 환경금융에 관한 국제협약	81
3. 미국의 환경금융	83
4. 일본의 환경금융	87
제 2 절 기후변화와 사회책임투자	88
1.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88
2. 사회책임투자의 분류	90
3. 주요국가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93
4. 사회책임투자와 수탁자의 책임	96
제 3 절 환경금융과 자본조달	97
1. 캐나다의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98
2. 영국의 환경금융지원제도	99

3. 프랑스의 환경금융지원제도	100
4. 일본의 환경금융지원제도	101
제 4 절 기후변화와 슈퍼펀드(Super Fund)	103
1. 미국의 포괄적 환경책임대응보상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03
2. 환경책임에 관한 연방정부의 대응	109
3. 금융당국의 책임	113
4. 수탁자와 금융대출기관	118
제 5 절 기후변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28
1.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내 금융관련 법제 분석	128
2. 국내 환경금융의 현황 및 한계점	133
3. 환경펀드	135
4.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개선방안	136
제 4 장 기후변화와 산업 활성화	139
제 1 절 서 론	139
1.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139
2. 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가?	141
제 2 절 기후변화의 국제적 대응	143
1. 기후변화협약의 이해	143
2. 국제적 논의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 논의	151
3. WTO TRIPs 등 통상 협정	159
4. 우리나라의 대응	161

제 3 절 환경 기술개발의 확대와 법적 지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163
1. 입법 논의	163
2.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개관	165
3. 평가 및 개정 논의	175
제 4 절 기후변화 대응과 지적재산권 제도	177
1. 기후변화 대응과 특허권의 역할	177
2. 기후협약에 따른 선후진국 기술이전 논의	180
3. 공익을 위한 권리의 제한 및 기술의 이전	183
4. 국제조약과의 관계	187
5. 공적개발원조와 지적재산권	189
6. 특허의 퍼블릭도메인화	191
제 5 절 소결론	193
제 5 장 결 론	197
참 고 문 헌	20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적 상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을 말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와 화산폭발로 인한 성층권 에어로졸의 증가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자연의 평균 기후변동을 의미한다. 특히 인류에 의한 환경파괴 중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온난화 문제 등은 그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등을 체결하며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그 영향력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으로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업활동 규제에 의한 경제활동의 위축 또한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2009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목표관리제 시행과 또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제도가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현 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모토 하에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이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였던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 또 기존 산업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통한 환경보호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며, 이러한 자발적인 인식 확산은 기존 산업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에 대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대로 보다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인식 확산을 통하여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자신의 영향력과 위치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위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국제적 추세에 맞게 직접 혹은 강제 규제가 아닌 자발적 인식확산과 준수노력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행위준칙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로부터 좋은 대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창조경제 활성화 수단이 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사회책임투자(Society 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경제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책임투자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사회책임투자의 도입과 그 활성화를 위하여 미국과 영국의 사회책임투자인식에 대한 현황과 법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또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하 ‘CERCLA’)상 대부자책임 규정 등 새로운 방식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경제적 성장을 하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영리회사법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사회책임투자라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사회책임투자란 통상의 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투자수단인 금융제도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는 종래 기업의 본질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로 회사법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쟁점이 좀 더 구체화, 행위 규범화된 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외부, 즉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시킴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치로서 기업의 영리성에 대한 극복 또는 영리성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가 보다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CERCLA를 통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심사시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사항까지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반하여 발생한 오염책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입 또한 향후 환경피해로부터의 구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후환경의 변화를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은 기술개발을 통한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환경기술, 에너지 기술 등은 많은 R&D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 주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원천기술은 물론 응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응용보다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국

내에서의 기술경쟁력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차이에 따른 경쟁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제를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기술이전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협약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국제 조약을 살펴보고, 국내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전략의 지표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기술의 공익적 측면에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기술적 가치부여 방안을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정책개발에 있어 국내의 기술이전,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적인 전략 방안을 위한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통하여 기술의 공익적 측면에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기술적 가치부여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원칙들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 범위를 기업, 금융, 산업으로 구분하고, 3개 분야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제 활성화 제도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원칙들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원칙들을,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원칙들에 관하여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각 분야별 제도와 원칙들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기대효과 등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보다 실효성있는 시사점 제시를 위하여 공동연구진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그 외 보다 심도깊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전수 조사 및 분석, 관련 외국 법령과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2장은 기후변화와 기업활성화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 제3장 기후변화와 금융활성화는 한국노동경영연구원 김명수 원장, 제4장 기후변화와 산업활성화는 경희대학교 김윤명 박사가 각각 세분화하여 공동연구로 진행한다.

제 2 장 기후변화와 기업 활성화

제 1 절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우리나라 또한 2009년 11월에는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기후변화의 다양한 정책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마련과 함께 기업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도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유연한 태도를 통한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전환이 장기적으로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02년 기업의 재무보고 남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이 통과된 후 환경 재무 공시제도를 비롯하여 환경에 있어서도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회사법상 규정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즉, 환경보호에 유익한지, 아니면 이와 달리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업이 환경법 위반으로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¹⁾ 이에 관한 판례로 다국적 석유회사

1) Mitchell F. Crusto, Green Business: Should we revoke corporate charters for environ-

UNOCAL사건에서 원고 측은 환경법을 위반한 회사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²⁾ 본 판결은 매우 흥미로운 기업 문제의 제기로 “국가가 환경 위반에 대해 회사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또는 이를 취소해야 하는가?”와 같은 다소 극단적인 제안을 쟁점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진적인 대응책과 달리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환경에 관한 자율규제기준으로 기업환경원칙(CEP: 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며, 이러한 노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원칙, 즉 CEP의 자발적 채택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었던 Enron, Worldcom, Arthur Andersen 등 기업의 금융 스캔들로부터 문제가 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까지 제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와 기업규제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회사법상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두 번째로는 모범적인 기업의 자율규제원칙인 기업환경원칙(CEP)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자발적인 기업의 환경원칙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과 시사점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증권법(securities laws)과 기업환경 공시사항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상 미국법률협회(ALI: American Law Institute)에서 새로 제안하고 있는 기업환경원칙을 통한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의 보완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mental vilocations?, Louisiana Law Review, 2003, pp. 178-179.
2) Doe I v. Unocal Corp., 395 F.3d, C.A.9 (Cal), 2002.

제 2 절 기후변화와 기업규제

1. 기업의 회사법상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최근 Enron(이하 ‘엔론’이라 함), Worldcom, Arthur Andersen 등이 연루된 기업 재무 스캔들사건은 기업 재무 공시에 관한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였다.³⁾ 엔론사건은 불법공모,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사기적 거래, 손실은폐와 회계부정, 증권사기, 통신사기, 위증, 자기거래, 내부자 거래 등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모두 발생한 사건이다.⁴⁾ 그 결과 엔론그룹은 파산하게 되었고, 종업원, 그 지역사회, 나아가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큰 손실을 야기하였게 되었고, 이로부터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되었다. 즉, 기업에 관하여 주장되어 왔던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관한 재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주주중심주의에 관하여 많은 회의론적인 입장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⁵⁾ 이와 같이 최근의 여러 재무보고 관련 사건들로 인하여 기업의 책임 일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재고가 시작된 것이다.⁶⁾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 과제는 기후변화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책에서나 법적으로 또 실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급진적인 해결방안으로 환경

3) Sarbanes-Oxley Act of 2002, 15 U.S.C. §§ 7201-7266

4) Russel Powell, The Enron Trial Drama: A New Case for Stakeholder Theory, 38 U. Tol. L. Rev. 1088, 2007.

5) 최준선, 기업의 부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2008.12. 875면 참조.

6) Margaret Graham Tebo, Fertile Water, A.B.A. J. 36-42 (Feb. 2001) (noting that “conditions are good for environmental lawsuits due to the success of Big Tobacco litigation, favorable law and new science.”)

위반 시 기업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⁷⁾ 환경, 특히 기후변화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기에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⁸⁾ 실제로 최근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나 수질, 토지 오염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⁹⁾ 양대 오염원, 즉 정부의 단속 부재와 효과적인 기업의 자율규제 능력 부재로 인하여 오염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라 함)에서는 최근 기업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의 환경감사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많은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¹⁰⁾ 하지만, 기업의 환경행동에 대해 사회의 기대와 기업의 행동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¹¹⁾ 따라서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법상 기업규제방안과 환경보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범적인 기업의 자율

7) In September 1998, a group of citizens filed a “Complaint Lodged with the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Under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 803,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 1801 to Revoke the Corporate Charter of the Union Oil Company of California (UNOCAL).”

8) “Climate change was recently... voted the 'greatest challenge facing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by hundreds of business and government leaders” attending a meeting of the World Economic Forum. Robert Hornung & Matthew Bramley, *Five Years of Failure: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 Inaction on Climate Change During a Period of Rising Industrial Emissions 2* (2000).

9) For example a recent study has found that as many as one billion people are regularly exposed to indoor air pollution. See for example, *One Billion Exposed to Excessive Indoor Pollution*, *Edie Weekly Summaries*.

10) EPA has promoted several initiatives such as the Environmental Leadership Program (ELP), Project XL, and its Environmental Auditing Policy, discussed in Frank B. Friedman, Chapter 6, in *Practical Guide to Environmental Management 66-71* (8th ed. 2000) [hereinafter “Friedman”].

11) Societal expectations of changes within corporate environmental behavior appear to be rising. First, there is the public's awareness of corporate-generated pollution. Second, there is greater demand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for corporate environmental protection. Third, there is increased demand for federal laws effecting change in corporate behavior.

규제원칙인 기업환경원칙의 우리법상 제시방안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법적인 여러 기준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법상 기업의 환경 행동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수단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그 동안 정부와 비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

회사법상 기업의 환경 책임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과 관련된 환경피해에 대한 단일 재해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발데즈호 석유 유출 사건(Valdez oil spill)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²⁾ 1989년 3월 24일 엑손사 유조선 USS 발데즈호는 Prince William Sound 인근 알래스카에서 좌초하여 북미 사상 최대 규모인 1,100만 갤론의 원유가 유출되었다.¹³⁾ 이 사고로 엑손사는 “선박과 화물로 인한 재해손실(약 21억 달러)과 벌금과 배상(약 1억 2,500만 달러), 정부 기관과의 합의(약 9억 달러), 민간 당사자와의 합의(약 3억 달러), 순 보상적 손해배상(약 1,960만 달러)을 비롯하여 석유 유출로 인하여 총 3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¹⁴⁾ 제9순회항소법원은 북미 최대 석유유출로 인하여 미국 사상 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수반되어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50억 달러는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⁵⁾

12) Legacy of an Oil Spill 10 Years After Exxon Valdez: 10- Year Report.

13) In re: The Exxon Valdez, 270 F.3d 1215, 1222 (9th Cir. 2001), remanded to the District Court, 236 F. Supp. 2d 1043 (D. Alaska).

14) Id. at 1244.

15) Id. at 1246 (citing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517 U.S. 559, 116 S.Ct. 1589 (1996) and Cooper Industries, Inc. v. Leatherman Tool Group, Inc., 532 U.S. 424, 121 S.Ct. 1678 (2001)).

엑손 발데즈호 석유 유출이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재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기업의 회사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 주요 기업의 환경 “재해”는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 즉, 지배구조상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규제되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회사법상 기업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에는 그 적용상 쉽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¹⁶⁾ 따라서 기업을 규제하는 회사법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의무는 어떻게 규제되는지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 진다.

환경법은 환경보호를 허용하고, 실제로 대다수 기업은 환경보호를 장려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회사법은 환경에 관하여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대기업을 자본과 인재, 기타 재원의 가용성에 힘입어 환경에 유익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것은 회사법상 요구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⁸⁾ 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합한 환경 전문가의 활용과 자본과 준비금 등의 투자, 주주의 기업 영리성 저해에 관한 우려에 대한 대응, 타기업과의 경쟁 우위의 중요성, 법인격부인의 가능성 등에 관한 많은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등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Super Fund 등 환경보호를 위한 상품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환경보호를 장려하고 있으나,¹⁹⁾ 현재 체제하에서 기업의 환경보호에 관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6) U.S. environmental law has adopted the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doctrine to attempt to hold senior manager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law infractions throughout an organization (George Van Cleve, *The Changing Intersection of Environmental Auditing, Environmental Law and Enforcement Policy*, 12 *Cardozo L. Rev.* 1215, 1226-27 (1991)).

17) Grant Ledgerwood & Arlene Idol Broadhurst, *Environment, Ethics and the Corporation* (2000) (especially Chapter 2, surveying the local and national focus of business thinking about corporate environmental strategy).

18) <http://members.ozemail.com.au/~pscrook/benefits.html>

19) Thomas J. Schoenbaum, et al., *Superfund and Hazardous Waste Liability*, in *Environmental Policy Law* 583-706 (4th ed. 2002).

(2) 회사법상 환경에 관한 기업의 책임

기업에 관하여 John Marshall 판사는 “기업은 주(州) 정부의 허가로 부여되는 지위이다....”라고 하였다.²⁰⁾ 초기 회사법상 기업은 주(州)의 회나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통하여 이 같은 그 지위를 확보하였다.²¹⁾ 현재는 미국의 경우 기업이 소재지에 관계없이 설립 지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주(州) 정부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기업은 규제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만을 따르고 있다.²²⁾ 따라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기업 발기인과 이사 대부분 기업세법의 구조가 투명하고 간결한 델라웨어(Delaware)주를 선택하고 있다.

기업이 설립되면 기업은 그 지위를 가지고 다양한 기업활동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기업의 지위가 상실되지는 않는다. 즉, 기업에 관하여 “... 주(州) 정부의 회사법이 일반적으로 투자자나 채권자, 고용주, 고객,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³⁾ 미국의 기업에 관한 전통적 입장을 살펴보면 초기 경영진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자 하였던 Berle의

20) *Trustee of Dartmouth College v. Woodward*, 17 U.S. (4 Wheat) 518 (1819) wherein Justice Marshall described the corporation as "the mere creation of law" and more recently in *CTS Corp. v. Dynamics Corp. of America*, 481 U.S. 69, 89, 107 S. Ct. 1637, 1649-50 (1987) wherein the Supreme Court reiterated the Dartmouth College view to support state authority to pass anti-takeover statutes). See also James Willard Hurst, *The Legitimacy of the Business Corporation 1780-1970* (1970)

21) *Paul v. Virginia*, 75 U.S. 168, 19 L. Ed. 357 (1869), Henry N. Butler, *Nineteenth Century Jurisdictional Competition in the Granting of Corporate Privileges*, 14 J. Leg. Stud. 129 (1985).

22) William Cary, *Federalism and Corporate Law Reflections upon Delaware*, 13 Yale L.J. 663 (1974); compare S. Samuel Aisht, *A History of Delaware Corporation Law*, 1 Del. J. Corp. L. 1 (1976).

23) Mark J. Loewenstein, *Delaware As Demon. Twenty-Five Years After Professor Cary's Polemic*, 71 U. Colo. L. Rev. 497, 503-07 (2000).

이론에 바탕한 주주지상주의(shareholder primacy theory)로 주주가 자금을 공급한 회사는 주주의 소유재산이고, 그 자금공급의 이유는 수익을 위한 것이므로 회사 경영진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이와 달리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해관계자주의(shareholder theory)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주주지상주의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업과 관련없는 분야에 주주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부정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회사는 사적인 결합체로서 사회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할 능력은 필요없다고 보며,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단지 수익의 극대화에 있다는 것이다.²⁵⁾ 이와 달리 이해관계자주의에 따르면, 그 사업 활동에 있어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기부행위 등을 통하여 공동체나 주주 이외의 자들의 이익추구행위도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가 단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⁶⁾ 최근까지 기업의 본질에 관하여는 주주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이사회와 구조와 기능, 그리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바탕으로 두고 발전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엔론, 월드콤 등 기업 스캔들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주의에 관한 부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경영진의 사기행위 개입 방지를 위한 투명경영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개혁을 위한 제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²⁷⁾ 이로써 기업 경영진들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24) 장덕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회사본질론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0, 83-84면 참조.

25) 장덕조, 앞의 논문, 90면 참조.

26) Amiram Grill, Corporate Governance as Social Responsibility, 26 Berkeley J. Int'l L., 2008, 452, at 458.

27) 한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상사판례연구 제22호 제3권,

내부 감시 시스템과 함께 기업 회계책임 메커니즘, 투명성 및 공시를 위한 제도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주주지상주의 입장은 그 범위가 확장되어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 근로자, 공급자, 고객, 은행 등의 금융업자, 규제당국, 그리고 널리 환경 및 지역사회 등까지 인정하는 이해관계자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3) 기업의 환경책임과 법인격의 부인

기업이 회사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하는 등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즉 설립이 취소되지 않는다.²⁸⁾ 다만, 기업의 법인격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까지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²⁹⁾ 법원은 이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흔히 합명회사에 대한 “책임전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알면서 체결하였거나, 악의로 참여한 자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나 연대책임을 부과하였다.³⁰⁾ 미국에서 법인격에 관하여는 집합설(aggregate theory)과 실재설(entity theory)이 인정되고 있다.³¹⁾ 집합설은 주주지상주의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회사를 주주의 사적 재산권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회사의 실재를 부정하고, 회사의 배후에 있는 주주라는 중요한 구성원에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³²⁾ 이와 달리 실재설은 이해관계자주의의 근

2009. 9., 319-320면 참조.

28) Rev. Model Bus. Corp. Act § 2.04 (1984) explicitly imposes liability on parties who purport to act on behalf of a corporation without incorporating. See also *Booker Custom Packing Co., Inc. v. Salloni*, 716 P.2d 1061 (Ariz. Ct. App. 1986); *T-K Distributors, Inc. v. Soldeve*, 704 P.2d 280 (Ariz. Ct. App. 1985); *Minich v. Gem State Developers, Inc.*, 591 P.2d 1078 (Idaho 1979); *Thompson & Green Machinery Co., Inc. v. Music City Lumber Co.*, 683 S.W. 2d 340 (Tenn. Ct. App. 1984).

29) Rev. Model Bus. Corp. Act § 2.04 (1984) (Official Comment, citing *Timberlane Equipment Co. v. Davenport*, 514 P.2d 1109 (Or. 1973)).

30) *Carlton v. Triplett*, 517 P.2d 136 (Kan. 1973).

31) 장덕조, 앞의 논문, 111면 참조.

32) 그러므로 주주지상주의의 법인관은 회사를 주주의 집합체로 보면서 이사는 주주

거가 되는 개념으로 회사를 독립된 법인격으로 취급하면서 이사는 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한 대리인으로 보며, 회사이익과 주주이익은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이익은 주주 이외에도 이해관계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채권자, 종업원, 지역사회, 공급자, 고객 등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은 법원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별 주주에게 기업의 채무를 부과하는 경우로 기업이 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격의 부인은 허위진술이나 과소 출자, 기금 혼합, 기업의 형식적 절차 준수 불이행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인정된다.³³⁾ 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³⁴⁾

기업의 환경책임과 관련한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에 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³⁵⁾과 관련된 모회사 - 자회사 간의 United States v. Bestfoods 사건³⁶⁾이다. 본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법상 충돌하는 두 개의 원칙을 인정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모기업은 자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³⁷⁾ 두 번째는 “주주를 대신하여 특정한 부당한 목적, 특히 사기를 달성하기

의 이익만을 목표로 삼는 수탁자이고, 이사의 경영권은 국가 법률이 아니라 주주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주주지상주의의 또다른 축인 계약이론도 회사는 주주들의 단순한 이익집합체로 본다(장덕조, 앞의 논문, 111면 참조).

33) Robert B. Thomps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 Empirical Study, 76 Cornell L. Rev. 1036 (1991) (offering an extensive empirical study of piercing cases and the courts' reasons for piercing the veil).

34) 예를 들어 모기업이 자회사를 이용하여 격주 폐점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법인격을 부인한다(Sundaco, Inc. v. State, 463 S.W. 2d 528 (Tex. Ct. App. 1970)).

35) 94 Stat. 2767, as amended, 42 U.S.C. § 9601-9628 (1980).

36) United States v. Bestfoods, 524 U.S. 51, 118 S. Ct. 1876 (1998).

37) 524 U.S. 51, 61, 118 S. Ct. 1876, 1885.

위하여 기업의 형식을 오용할 경우...” 법인격은 부인되며, 이 경우에는 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본 판결에 대하여 Souter 대법관은 “모회사의 책임은 모회사의 참여나 자회사 통제가 아니라 위반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³⁹⁾ 이와 같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환경법 위반을 이유로 기업에게 그 지위를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기업 설립의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상법의 경우 기업에 관하여 법인실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⁴⁰⁾를 살펴보면, “법인은 하나의 실체로서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체”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상 주주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⁴¹⁾한 바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대표소송의 경우 주주들이 그 소송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나, 그 결과는 주주가 아닌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 또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설의 근거라 볼 수 있다고 한다.⁴²⁾ 이와 같이 기업의 환경준수를 요건으로 기업의 법인격부인에 관한 논의와 같이 기업의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논의되었으며, 향후에도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급진적 접근방식은 그 인정여부에 있어 매우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업의 행위로 인한 심각한 환경침해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환경위반을 초래한 기업의 경우 그들이 야기한 광범위

38) 524 U.S. 51, 62, 118 S. Ct. 1876, 1885 (citing *Anderson v. Abbott*, 321 U.S. 349, 362, 64 S.Ct. 531, 538 (1944) and P. Blumberg, *Law of Corporate Groups: Tort, Contract, and Other Common Law Problems in the Substantive Law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6.01-6.06 (1987 & 1996 Supp.))

39) *Bestfoods*, 524 U.S. at 68, 118 S. Ct. at 1887.

40) 대법원 1978.2.28, 선고 77누155 판결.

41)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42) 장덕조, 앞의 논문, 114면.

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기업에게 재정적인 피해나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기업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해는 더 나아가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보호에 관한 재고를 위하여 기업의 존속과 연관된 회사 설립 취소의 문제를 요건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2. Unocal 사례

(1) 사실관계⁴³⁾

오랫동안 군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미얀마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 군부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천연가스 개발을 위하여 군부는 미얀마의 야다나(Yadana)지역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이를 송유관을 통해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는 프랑스의 석유회사인 토탈(Total S.A)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의해서 추진되었다.⁴⁴⁾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것은 총 400Km에 이르는 송유관 설치공사과정에서 군인에 의한 살인, 구타, 강간, 고문, 강제노동, 재산몰수와 같은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미얀마군대, 미얀마국영석유회사, 토탈 그리고 유노칼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1997년 9월 4명의 주민과 미얀마노조연합, 미얀마정부연합이, 이어 1997년 10월에는 다른 14명의 주민이 유노칼, 토탈, 미얀마석유회사, 미얀마 군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1997년 지방법원은 미얀마군대와 미얀마석유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주권면제법⁴⁵⁾에 따른 면책을 인정하며 관할을 부인하였고,⁴⁶⁾ 토탈에 대해서는 인적관할권이

43) Doe I v. Unocal Corp., 963 F.Supp. 883 (C.D.Cal.1997)

44) 컨소시엄에는 토탈 외에 미얀마국영석유회사 유노칼, 그리고 태국국영석유회사가 참여하였다. 유노칼은 프로젝트 지분의 28%를 보유하고 있다.

45)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FSIA).

46) Doe v. Unocal Corp., 963 F.Supp. 880, C.D.Cal.,1997.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다.⁴⁷⁾ 따라서 유노칼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게 되었고, 2000년 8월에 지방법원은 “유노칼이 살인, 강간, 고문, 강제노동 등 군인에 의한 인권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유노칼이 미얀마 군대를 통제했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노칼의 입장을 지지하였다.⁴⁸⁾

(2) 본 사안의 평가

본 사안에서 원고 측은 항소를 통하여 군대가 국제법상 위반행위인 살인, 강간, 고문, 강제노동 등을 행하였으며, 유노칼은 그 인권침해행위를 교사·방조하였다며 유노칼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유노칼의 교사·방조행위 인정여부에 관하여 단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사·방조의 기준을 “의도적인 실제의 조력, 조장 또는 범죄의 실행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지지”라고 인용하였다.⁴⁹⁾ 또한, 국제법 위반행위의 주체의 판단에 있어서 그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고 보았다.⁵⁰⁾ 국제법상 강간, 고문, 살인과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주체가 국가가 되는 것이기에 개인이나 기업은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⁵¹⁾ 따라서 본 항소법원에서의 판결에 따라 유노칼은 강제노동에 있어 교사·방조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유노칼 판결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사례로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적 관점에서 논의가 제기된

47) Doe v. Unocal Corp., 67F.Supp.2d 1140, C.D.Cal. 1999.

48) Doe v. Unocal Corp., 110F.Supp.2d 1294, C.D.Cal., 2000.

49) “Knowing practical assistance, encouragement, or moral support which has a substantial effect on the perpetration of the crime.”(이상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맥락에서 본 유노칼 판결의 의미, 법학논집 제31집 제2호, 2009, 201면 각주 56 참조).

50) 이상수, 앞의 논문, 202면 참조.

51) 다만,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노예매매의 현대적 변형이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주체도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직접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이상수, 앞의 논문, 202면).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수많은 환경피해관련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⁵²⁾ 유노칼 판결은 국제법적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켰으며, 현행법상 위험과 손해를 넘어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의 문제까지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아울러 다국적기업 Unocal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회사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 논거로는 기업의 설립 허가와 취소가 단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활동이 일자리 창출과 환경, 그리고 공익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불법행위를 행한 기업을 해산하여 경영을 중지시키고, 그 기업의 자산은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ocal 사례 외에도 담배회사의 회사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앨라배마 주의 소송이나 뉴욕 주 검찰총장이 담배연구협의회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⁵⁴⁾ 등도 있다.⁵⁵⁾

52) *Amlon Metals, Inc. v. FMC Corp.*, 775 F.Supp. 668, S.D.N.Y., 1991; *Beanal v. Freeport-McMoran, Inc.*, 969 F.Supp.362, E.D.La., 1997; *Aquinda v. Texaco, Inc.*, 142 F.Supp.2d 534, S.D.N.Y.,2001; *Bano v. Union Carbide Corp.*, 273 F.3d 120, C.A.2(N.Y.), 2001; *Sarei v. Rio Tinto PLC.*, 221 F.Supp.2d 1116, C.D.Cal.,2002.

53) 이상수, 앞의 논문, 205면 참조.

54) 자산은 주립 교육보건기관에 기부되었다.

55) 텍사스대학교의 저명한 기업법 교수는 이 같은 기업 설립 취소에 관하여 오늘날 기업의 설립취소는 면허세 미납이나 기업의 무활동, 혹은 “살인청부업”과 같은 목적의 불법성(청부살인을 목적을 삼은 *Murder Inc.*)을 이유로만 드물게 허용된다며, 환경 등을 이유로 한 기업의 설립허가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Email correspondence from Professor Robert W. Hamilton to Mitchell F. Crusto (Mar. 15, 2002)*, printed with Professor Hamilton's permission (on file with author).)

3. 회사법상 환경보호 증진의무

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살펴볼 때, 기업을 규제하는 회사법이 환경보호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의 성과를 점점 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에 수반하여 기업지배구조 또한 이전의 주주지상주의의 관점에서 점차 이해관계자와 윤리적 고려사항들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경영자들이 근로자·소비자·지역공동체를 주주들과 함께 고려하면서 기업을 환경적·사회적 필요와 더욱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⁵⁶⁾ 미국법률협회(ALI)는 기업지배구조의 체계화를 위하여 1994년 기업지배구조원칙: 분석 및 제언⁵⁷⁾을 발표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원칙 제2.01조는 “기업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1)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⁵⁸⁾하면서 이러한 원칙 등은 “수익 향상 여부에 관계없이 즉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거나 순 경제 손실을 수반하더라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⁵⁹⁾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원칙은 회사법 준수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비용편익에 따른 경제적 계산이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원칙은기업의 본래 목적인 영

56) Doreen McBarnet, Aurora Voiculescu & Tom Campbell (eds.), *The New Corporate Accounta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Law* 9-23, 2007.

57)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검토는 주립 회사법의 일부 단점을 보여 주며, 보다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Charles Hansen, *A Guide to the ALI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1995). For a critique of the Principles).

58)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2.01(b)(1) (1993).

59) *Id.* at § 2.01(b)(1), comment (g) (1993).

리성 추구에 따라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나,⁶⁰⁾ 이와 달리 기업이 윤리적 고려사항을 참작하고 공공복지와 인도주의, 교육, 박애주의적 목적에 합당한 재원을 분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따라서 기업에게 적법한 행위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통한 윤리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리성 추구에 있어서도 최근 이사 및 임원 등 기업 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직원과 납품업체, 고객,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⁶²⁾ 이 같은 변화는 기업의 환경보호 증진에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기업환경원칙(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CEP’)⁶³⁾

1. 기업환경 목표와 기업 행위

회사법은 사실 환경에 관한 문제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영리추구활동과 그에 대한 규제 등을 기반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에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방안 중 하나로 ‘기업환경원칙(CEP)’이 제안되었다.⁶⁴⁾ 동 원칙은 법적 준수를 강조하며 준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동 원칙은 투명성을 장려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등 관련된 당사자들의 모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에게 지배구조상 환경관리에

60) Compare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 89 Geo. L.J. 439 (2001).

61)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2.01(b)(2) and (3) (1993).

62) See, e.g., Ill. Bus. Corp. Act, 805 Ill. Comp. Stat. 5/885 (1983) (Discharge of Duties-Consideration).

63) CEP follows the format of the American Law Institute'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64) 정경영, 사회책임투자과 기업의 영리성의 조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III, 한국법제연구원, 2012, 145면 참조.

비중을 두고 환경문제에 대한 이사와 임원의 책임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환경원칙은 환경관리에 대해 먼저 운영차원에서 준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준법 불이행에 대해 고위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상향식’ 접근방식을 제안한다.⁶⁵⁾ 환경과 관련된 법규(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는 방대하고 극히 기술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법적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지 규제의 준수가 환경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창출해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동 원칙은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은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기업행위에 적합하다고 합당하게 간주되는 윤리적 고려사항을 참작하고 합당한 재원을 환경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⁶⁶⁾

2. 기업환경원칙의 필요성

기업이 기업환경원칙과 같은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원칙을 채택하는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법률상의 이유로, 두 번째 이유는 투자자 보호의 이유로, 세 번째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도덕 또는 윤리적 이유에서이다. 사실 기업환경원칙은 효과적인 환경 준수 프로그램의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⁶⁷⁾ 이 밖에 기업환경원칙을 통하여 환경위반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게 되

65) 이와 달리 “하향식” 접근방식은 “준법 이상의” 요건을 회사에 부여하고 환경을 “경쟁우위”로 이용하는 고위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된다.

66) Mitchell F. Crusto,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A Congressional-Driven Global Environmental, 11 Geo. Int'l Env't'l L. Rev. 499, 519 (1999) (proposing a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featuring pollution prevention, performance measurements, and integrating the environment into business operations).

67) Friedman, supra note 10, at 51-115.

는 형사 벌금이나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⁶⁸⁾ 두 번째로, 대다수 기관 투자자는 투자의 지침을 삼기 위해 기업의 환경 취약성부분에 대한 공시를 원하고 있다.⁶⁹⁾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자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⁷⁰⁾ 다섯 번째로 기업환경원칙은 소비자나 납품업체, 공급업체, 현지 사회, 환경 활동을 비롯하여 구성 그룹과 거래할 때 기업의 평판을 강화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기업환경원칙은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⁷¹⁾ 이러한 요인은 기업 준법 프로그램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곱 번째로 기업환경원칙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이다.⁷²⁾

(1) 기업환경원칙은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위해 중요하다.

기업이 “준법 이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기업은 현실적이고 유일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우수한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준법 프

68)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crimes propose a reduction in criminal penalty if a company h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ee Kenneth S. Woodrow, *The Proposed Environmental Sentencing Guidelines: A Model for Corporate Environmental Compliance Programs*, 25 *Env't'l Reg.* 325 (BNA June 17, 1994).

69) In Great Britain, the Associating British Insurance adopted new guidelines requiring corporations to disclose environmental issues in their annual report. See Vol. XII, No. 5 *BATE* (No. 8, Aug. 2002).

70) For example, the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IRRC) is a socially conscious investor group. See <http://www.irrc.org>.

71)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Studies and the Monsanto Pledge. Joseph Fiksel,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nvironmental Excellence* 4 (Mar. 1996).

72) For a valuable analysis of the ethical dimensions of environmental conscience, our attitudes toward nature and the problems of “distributional justice-i.e., sharing environmental burdens across racial, economic, and intergenerational categories,” see *Ethical Dimensions*, in *Environmental Law Anthology*, Chap. 1 (Robert L. Fischman, et al, eds. 1996).

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기업환경원칙을 채택해야 하는데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다. 동기를 불문하고 환경 법규 준수는 어느 기업이나 가장 까다로운 과제에 속한다.⁷³⁾

기업환경원칙을 채택하는 기업의 편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환경원칙은 환경 관리와 윤리적 행동에 균일한 규칙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기업환경원칙은 경영자와 임원, 이사 차원에서 기업의 책임 강화를 장려한다. 세 번째로, 기업환경원칙은 자율규제를 장려하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기업환경원칙은 환경 관리와 윤리적 행동에 관한 일반 시민의 교육을 장려한다. 따라서 기업환경원칙은 시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2) 기업환경원칙은 형사 벌금이나 처벌을 완화할 수 있다.

1993년 3월 5일 미국 양형위원회 자문단(advisory group to the U.S. Sentencing Commission)은 연방 환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직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권장 양형 지침 실무 초안을 제출하였다. 동 제안은 위반 조직의 양형을 고려할 때 준수해야 할 5단계를 약속하였다. 적용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기준 벌금 판단, 악화 및 완화 요인, 환경 준수 요인, 일반 제한, 집행유예. 환경 관리 프로그램의 수립은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환경원칙은 기업 환경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완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환경 범죄는 고의의 입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⁷⁴⁾

73) The federal government has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Exec. Order No. 13148, 3 C.F.R. 241 (2000)

74) See environmental scienter requirement, Friedman, *supra* note 10, at 25-26.

(3) 기업환경원칙은 새로 개발된 학문을 따른다.

전국 이사회실과 교실에서는 전략적 기업 환경 관리 원칙을 채택하는 새로운 학문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환경원칙은 이와 같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 관리 분야를 취급한다. 환경 관리는 아직 “학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 명성에 힘입어 학문 분야의 지위는 확보하였으며 각종 경영대학원에서는 교과과정에 이를 수용 및 추가하고 있다.⁷⁵⁾

환경 관리는 다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광의의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환경 관리는 준법과 정부 및 공동체 관계, 경영 원칙을 고려한다.⁷⁶⁾ 환경 관리는 위험 완화와 감사, 공적 책임, 기획, 상관습, 지역사회 및 직원의 참여, 원가관리 원칙을 통합한다. 수명주기 분석과 환경 회계나 전비용 회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14000과 같은 국제 환경 표준, 지속가능한 제조, 오염방지 전략, 종합품질 관리가 이러한 수단에 포함된다. 이러한 수단을 모두 단일한 경영 전략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전략적 환경 관리”, 또는 “환경 관리 전략을 통한 경쟁 우위의 추진”이다.⁷⁷⁾

(4) 기업환경원칙은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접근방식을 따른다.

환경 보호에서 발달되고 있는 추세는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질보존법에 의거하여 완화 제방은 CWA 제404조 허가 프로

75) Friedman, supra note 10, at 51, n. 1 (referring to a report that “as of May 1995, up to 50 business schools and 100 other schools included ‘environmental business’ courses in their curricula. Env’t Today 1 (May 1995)”).

76) These observations result from my profession as a pioneer of strategic environmental management at Monsanto Company in St. Louis and at Arthur Andersen's Worldwide Environmental Management Consulting Group in Chicago.

77) Friedman, supra note 10, at 73. See also Bruce W. Piasecki et al.,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Business Strategy: Leadership Skills for the 21 st Century (1999).

그럼과 습지 손실을 상계하기 위해 거래되는 “대변”이나 “차변”을 허용하는 식량안보법 습지 보존 조항(Food Security Act wetland conservation provisions)에 부합할 수 있다.⁷⁸⁾ 환경 규정은 흔히 자유시장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이 같은 추이는 시장의 힘과 자율규제의 연계를 추구한다. 이 경우 환경제도의 자율규제는 기업환경원칙과 환경보호의 목적의 연계가 될 수 있다. 조직이 준법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한 후 자체적으로 개선된 신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준법을 능가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최종 결과, 즉 환경 보호는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기업환경원칙은 내부 및 외부 영향을 모두 채택한다. 따라서 기업환경원칙의 주요 편익은 재원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 피해는 완화하는 것이다.

- (5) 기업환경원칙은 외부 영향을 내재화하여 기업이 “준법을 능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대다수 외부 조직과 그룹은 “환경 관리 프로그램(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s)”을 이용하여 기업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환경 관리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환경 기준이 발달하자 기업은 기존 프로그램 강화 방안에 대한 기대와 지침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출처를 모색할 수 있다. 아래 설명은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영향 요인의 개요이다. 이러한 목록은 완전하지 않지만 지난 수년 동안 대표적인 영향 요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영향 요인과 표준은 다음과 같다: ISO 14000, BS 7750, ANSI/ASQC E4, 공동체 환경관리 및 감사제도. 기업환경원칙은 이러한 외부 영향력을 유효하게 내재화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부의 추이를 서술한다.

78) Clean Water Act, 33 U.S.C. § 1311(a)(2001).

3. 기업환경원칙의 주요내용

(1) 법적 준수

1) 준 법

관련 관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법규를 반드시 준수한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운영(조인트 벤처, 공급자, 소비자를 포함한다)고 관련된 법률과 법률의 적용 범위를 상세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정부 규제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규제에 대응한다. 운영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삼는다.

2) 감 사

법규와 절차, 정책, 원칙의 준수에 대해 연간 환경 감사 및 평가를 수행하며, 신설 법률 요건, 문제가 있는 운영 분야, 규제상 변동이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정기 감사를 수행한다.⁷⁹⁾

3) 공 시

- (a) 환경 감사 결과에 관한 연간 감사 환경 보고
- (b) 신설 법률 요건, 문제가 있는 운영 분야, 규제 추이에 관한 분기별 보고
- (c) 운영 시설의 신속하고 균일한 월별 정기 환경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공고

79) 1991년 국제상공회의소는 정기 환경 감사 및 준수를 통하여 “환경관리를 기업의 최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 현장, 16대 원칙 목록”을 작성하였다 (Friedman, *supra* note 10, at 115).

4) 다국적기업의 운영

준거법을 정하되, 각국의 환경법규를 이해 및 준수하도록 한다. 특정국의 기준이 준거법보다 엄격한 경우 해당 국가의 기준을 준수하나, 준거법에서 해당 기준을 지도 기준으로 삼는다.⁸⁰⁾

(2) 공동체/직원 안전/알 권리/비상대비

1) 공동체 참여 및 안전

현지 지역사회나 공동체가 운영에 있어서 제품, 폐기물, 서비스의 실제 영향이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제 우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국경간이나 글로벌적인 다국적 기업의 사례 등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의학적인 영향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대응한다. 지역위원회를 창설하고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는다.

2) 직원의 참여 및 안전

종업원과 컨설턴트가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실제 경우나 우려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원활한 근무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지속적인 의학적인 영향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대응한다. 환경 위반이나 위험에 관한 내부자 신고제도 등을 통하여 이를 장려한다. 지속적으로 환경 위험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80)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의 환경 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in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는 이 같은 표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Id. at 96. Also available at <http://www.ogp.org.uk/pubs/254.pdf>).

3) 긴급상황에 대한 예방

국경 간 긴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나 지역사회와 함께 비상대책 계획을 입안 및 유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분담에 있어서는 납품업체나 운송업자, 소비자 등과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4) 위험 완화 목표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안전한 기술과 시설, 운영 절차를 통하여 종업원 및 현지 공동체에 대한 환경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최소화한다. 위험 완화 목표를 정하고 직업안전건강법을 비롯하여 안전 및 위험 관리 기능을 통합한다.⁸¹⁾

(3) 정보 수집 및 관리

월별 분석과 함께 신속한 환경 데이터의 수집 및 배포를 위하여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전산 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진과 고위 경영진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경 준수 및 성과를 감시 및 개선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4) 시설 평가

1) 비상 대비

중대한 위험이 존속하는 경우 국경간 영향을 인식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 서비스와 관련 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비상대책계획을 개발 및 감시한다.⁸²⁾

81) OSHA's final processing and management regulations. 57 Fed. Reg. 6356 (February 24, 1992) (codified as amended at 29 C.F.R. pt. 1910 (1996).

82) IC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vailable at <http://www.iccwbo.org/home/environment-and-energy/environment charter.asp>.

2) 예방 대책 및 프로그램

신규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에 환경 영향을 평가한다.

3) 설계 및 운영

재생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나 불리한 환경 영향의 관리 및 폐기물 생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잔류 폐기물의 처분을 참작하여 시설을 개발, 설계, 운영하고 활동을 수행한다.

(5) 폐기물 처분 및 오염방지

1) 폐기물의 감축 및 처리

배출원 감축 및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을 감축하고 가급적 이를 제거한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을 통하여 전체 폐기물을 취급 및 처리한다.

2) 오염 방지 대책 및 프로그램

폐기물 흐름과 생산 방식, 기준 무게 등을 식별 및 분석한다. 배출원과 제조과정 전반에 오염과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오염과 폐기물을 감축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생산 과정을 개선한다.

3) 독성물질 사용 감소

독성 화학물질과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생산과정에서의 사용을 식별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감소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4) 목표 및 일정

이행 목표와 목적, 일정 등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한다.⁸³⁾

(6) 제품 및 서비스 안전

1) 환경 경영 전략

환경 원칙과 목표를 각 경영 분야에 통합하고 환경 보호 장려를 통하여 기업의 전략적 우위와 경쟁 사업 우위를 추진한다.

2) 제품 영향

환경 피해나 건강이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제조 및/혹은 판매를 완화하거나 가급적 금지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불안정한 사용의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⁸⁴⁾

3) 제품 개발

부당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사용 목적에 안전하고,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소비에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재활용, 재사용,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및 공급한다.⁸⁵⁾

4) 예방적 접근방식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적 이해에 맞게 제조 마케팅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활동 수행을 변경한다.⁸⁶⁾

83) 예를 들어 2004년까지 누설 및 유출 사고를 90% 감축한다.

84) CERES,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vailable at <http://www.iccwbo.org/home/environmentand-energy/environment charter.asp>.

85) IC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vailable at <http://www.iccwbo.org/home/environmentand-energy/environrment charter.asp>.

86) Id.

(7) 공 시

건강이나 안전,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회사 시설 인근 공동체 주민과는 대화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자문과 조언을 구한다.⁸⁷⁾ 사고 위험이나 위험요인 등에 관하여는 경영진이나 주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직원과 주민들에게 이를 권고하고, 최대한 보호한다.

(8) 자본 지출

환경 준수 프로그램이나 개선, 제품 안전, 폐기물 처리, 본 기업환경 원칙을 편리하게 취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

(9) 장기 기획 프로그램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환경관련 문제나 이슈들에 대하여 사전에 식별, 분석, 개발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통합적인 준수 요건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안내한다.

(10) 환경 복구

건강이나 안전,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점들은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시정한다. 인명 상해나 환경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거나, 치료 및 복구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11) 생물권/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물이나 토양, 산림과 같은 재생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 효율적인 사용과 신중한 대책을 세워 비재생천연 자원은 보존한다.

87) CERES, The CERES Principles available at <http://www.ceres.org/ourwork/principles.htm>

(12) 생물다양성의 보호

대기나 수질, 토양,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방출을 감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 전체를 보호하고, 오지와 황무지를 보호하는 한편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

(13) 에너지 보존

에너지를 보존하고 내부 운영과 판매 또는 공급 물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환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4) 환경 관리 시스템

- ① 재정 및 승진 유인책을 이용하여 직원과 현장 주민의 환경 행동 주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한다.
- ② 성공·실패 사례와 모범사례를 월간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 ③ 회사의 주요 구성원을 대변하는 환경위원회를 창설하고 매월 소집한다.
- ④ ISO 26000 표준을 채택한다.

(15) 고위 경영진 약정/책임

관련 환경 문제는 이사회나 최고경영책임자에게 상세히 통지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사회나 최고경영자 선정 시 자격요건으로 환경 공약을 추가한다. 이사회 내에 환경위원회를 창설한다.⁸⁸⁾

88) CERES, The CERES Principles available at <http://www.ceres.org/our-work/principles.htm>.

(16) 주주 약정/책임

환경 보고서에 준법 정보와 법률 노출, 환경 피해 가능성, 위험 평가를 공개하여 주주의 환경 보호 활동을 유인한다.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주들의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공론화하도록 한다.

(17) 종합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소비자의 요구, 지역사회의 기대를 바탕으로 한 규제를 통하여 기업 정책과 프로그램,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에서도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⁸⁹⁾

(18) 시공사 및 납품업체

시공사와 납품업체, 합작회사에게 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본 기업환경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의 적절한 개선을 의무화하도록 정한다.

(19) 소비자 통지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운송, 보관, 처리에 대해 고객과 물류업체, 일반에 통지하고 적절히 교육하며, 서비스 공급에도 유사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20) 연구

기업과 관련된 원료와 제품, 생산과정, 배출량, 수질의 환경 영향과 해당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 또는 지원한다.⁹⁰⁾

89) IC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vailable at <http://www.iccwbo.org/home/environmentand-energy/environment charter.asp>.

90) IC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vailable at <http://www.iccwbo.org/home>

(21) 기술 이전

산업 부문과 공공 부문을 통하여 친환경 기술과 관리 방법의 이전에 기여한다.

(22) 공동 노력에 대한 기여

환경 인식과 보호를 강화하는 공공정책을 입법화하거나 기업, 정부, 정부간 프로그램 및 교육 기관을 통하여 보다 보편화되도록 한다.

(23) 보 안

테러공격이나 범죄 공격으로부터 시설과 재산, 제품,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4. 기업의 효과적인 환경관리

(1) 기업지배구조상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는 이사회를 주축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장으로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동 위원회는 환경 준수의 보장과 주주나 활동 지역, 일반인들에 대하여 환경성과에 관한 보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운영위원회(Environmental Operating Committee)를 통하여 정기적인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에 관한 논의와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 등을 모색할 수도 있다.

</environmentand-energy/environment/charter.asp>.

(2) 기업의 환경관리 프로그램

각 회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자율적인 내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효율성으로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부 요인으로는 전략과 기업의 의무, 위험요인, 기업문화, 고객의 기대,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전략 및 임무

환경관리프로그램의 수립과 관련된 일차적인 업무는 고위 경영진이 먼저 환경관리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⁹¹⁾ 이 같은 전략은 마케팅이나 재정, R&D, 종합 품질관리와 같은 기존 전략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상충되지 않으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전략은 기존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 전략의 필수 요소로는 환경 정책 또는 기업환경원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환경관리프로그램은 일반인뿐 아니라 고객과 직원, 이사회, 주주의 기대를 모두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본 정책이 동일 그룹의 향후 기대와 목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을 공고하거나 연차 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강제적인 의무가 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마케팅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효과적인 브랜드 라벨이 성공적인 마케팅과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오고 있다.

91) Rosemary O'Leary, et al, Managing for the Environment: Understanding the Legal, Organizational, and Policy Challenges 1999) (showing business managers how to integ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into business strategies, structures, and information systems).

보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 경영진은 일정 핵심 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업과 사업 분야 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다만, 경영진이 제기하는 환경관련 전략들은 회사의 활동과 제품, 서비스, 환경 영향에 적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전략은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환경개선에 관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경영진은 조직의 문화를 고려 및 활용하여 전체 경영 요소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 모두의 “적극적 참여”유도해야 한다. 정책이 수립되면 경영진은 본 전략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향후 그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2) 위 험

환경관리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업종의 성격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위험요인들이다. 특정 업계들은 업종의 성격상 폐기물이 생성되는 양이 증가하거나 다른 업종에 비해 환경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업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 위험과 노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금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들 기업의 환경관리프로그램은 보다 상세하고 예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인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극도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기업 문화

기업문화는 환경관리프로그램에 있어서 전체적인 운영 방법과 전략 방향, 그리고 그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

문화를 평가할 때는 일부 핵심 분야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며, 기업 경영진의 리더십 스타일과 비전, 목표가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조직 구조와 윤리, 외부 업계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환경 전략의 논리성과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문화 등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분산 경영 구조를 갖춘 기업의 경우에 환경 관리프로그램을 중앙 집중식의 운영방안을 선택한 경우 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4) 고객의 기대

고객의 기대도 성공적인 환경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납품업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제품 개발 시 고객의 기대치를 고려하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고객의 기대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환경관리프로그램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 볼 수 있다.

제 4 절 기업을 위한 국제환경규범

최근 기업 활동에 국경이 없어지고, 그 활동이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다국가간 또 그 범위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예측이 어려운 사안들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존 체제와 다른 새로운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다각적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과 경제협력기구(OECD),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등 정부간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법, 자발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연성법(soft regulation) 공식 또는 비공식적 조직, 환경이나 무역

과 같은 특정이슈와 연관된 원칙, 규범, 의사결정 절차 등의 종합체로서의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등이 주축이 되고 있다.

1. 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

국제연합(이하 ‘UN’이라 함)에서는 오래 전부터 각종 규범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⁹²⁾ 최근 UN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컴팩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이 1999년에 글로벌 경제를 존속시키고 전 세계인이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환경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세계 경제지도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세계 50개 주요 기업 경영진과 노동, 환경, 인권, 개발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기업들이 글로벌화 시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유엔의 기관이나 시민 사회와 함께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이 인권·환경·노동·부패 방지에 관한 10원칙의 지지와 동 원칙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⁹³⁾

92) UN의 기본권 보장선언으로는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이 있다.

93)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2013, at 3.

인권	원칙 1. 기업은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인권의 옹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 2.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는다.
노동	원칙 3. 조합 결성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지지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한다. 원칙 5. 아동노동을 실효적으로 폐지한다. 원칙 6.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대처한다. 원칙 8. 환경에 관해서 한층 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한다. 원칙 9. 환경에 좋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한다.
부패 방지	원칙 10. 강요와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방지에 대처한다.

2013년 리포트에 따르면 140여개 국가로부터 8,00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⁹⁴⁾ 글로벌 컴팩트를 통하여 각 기업들은 책임있는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자발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컴팩트는 글로벌 컴팩트에서 제안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관한 원칙이나 방안이 반영되도록 지원하며, 전지구적 차원의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컴팩트는 규제수단이나 어떠한 원칙이기 보다는 회원사들의 ‘제도적 학습’을 위해 고안된 가치기준이라 할 수 있다.⁹⁵⁾ 따라서 글로벌 컴팩트 회원사들은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이로부터 이행사례나 이행 성과 등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94)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Id, at 4.

95) 노한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동향 - 국제기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제3호, 2008, 116면 참조.

2.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라 함)는 글로벌화 차원에서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족되었으며, 전세계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원조, 다각적인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고용의 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달성하고, 이로부터 세계 경제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균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재정적·비재정적 요소의 지원을 하며, 세계 무역의 확대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외의 기타 분야에도 공헌을 하고 있다.⁹⁶⁾

OECD는 국제투자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1970년대부터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후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GME’라 함)을 발행하였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행위지침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닌 임의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2011년 보고서 상 총 42개국이 각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홍보와 그 이행 문제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발전에 대한 공헌을 촉구하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당사국의 공공정책과 협조를 이루며, 기업 간의 투자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헌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국적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

96) ① 고령화대책, ② 뇌물과의 전쟁, ③ 비가맹국과의 협력, ④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⑤ 교육과 훈련, ⑥ 전자상거래, ⑦ 고용, ⑧ 거시경제정책, ⑨ 규제개혁, ⑩ 지속가능한 개발, ⑪ 세제, ⑫ 무역.

다.⁹⁷⁾ 특히, 환경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은 진출국의 법, 규제, 행정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국제협약, 원칙, 목표,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과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광의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있다.⁹⁸⁾

3.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CO-Audit)

유럽의회는 1993년 1월에 제정되어 1994년에 시행된 산업계의 에코 감사제에 대한 자발적인 규제를 승인하였다. 이는 본래 ECO-Audit이라 불리던 제도로 강제적인 규제는 삭제되면서, 자기감사를 위한 외부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회사 활동 중 환경관련 부분을 공시하고 중요한 환경 문제들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EC의 경제사회 위원회는 이 자율 프로그램은 “매우 환경적인 위험”이 높은 사업에서는 강제규제이어야 한다며 외부감사의 설치에 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에코감사에 관한 추가규정에 대하여 제안한다.⁹⁹⁾ 이러한 제도는 EC의 구성원과 거래하는 당사자에게도 적용되며, 몇몇 나라들은 위험한 물질들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회사나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EC 프로그램은 감사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준법지원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특별한 로고와 광고를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 로고는 상품을 수령한 고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¹⁰⁰⁾

97) 2004년에는 환경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Environment an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환경에 대한 기업의 기여 제고(Encouraging the Contribution of Business to the Environment)라는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98)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2011, pp 42-47.

99) Friedman, supra note 10, at 234-237, 256.

100) Rebecca P. Thompson, Thomas E. Simpson, and Charles H. LeGrand, Environmental

4.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시리즈는 1947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글로벌 환경 선언(Global Environmental Initiative)에서 기업이 타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준을 정하였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¹⁰¹⁾ 제도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ISO 표준은 자발적 규제로 기존의 법적 효력과 같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제도의 적용은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선언하거나 제3평가기관에 의한 승인 등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자발적 규제이나, 향후에는 환경보호 등을 위한 기준으로 보다 강제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ISO 26000은 기업과 민간조직은 물론 공공조직 등 모든 종류의 조직이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다.¹⁰²⁾ ISO 26000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운영하여 왔는데, 그 중 ISO 14000은 환경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사내에 사용될 뿐 아니라 보험회사를 비롯한 외부 금융기관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 따라서 ISO 14000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행동에 대한 균일한 규칙의 채택을 이끌었으며,¹⁰³⁾ ISO 14000 규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벌금을 통한 환경 관리에 대한 직원의 참여 증대와 문서 관리 및 제조 효율 개선, 비규제 영향에 대

Auditing, Internal Auditor (April 1993). EPA announced an initiative to integrate monetary cost information into routine management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13 BATE (No. 7, July 2002) at 11.

101) Friedman, supra note 10, at 237-243, 256-258.

102) ISO, ISO26000 Social responsibility- ISO26000 project overview, 2010.

103) Donald A. Carr & William L. Thomas, Devising a Compliance Strategy under the ISO 14000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15 Pace Env't. L. Rev. 85 (1997) (examining development and adop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and explaining role of ISO 14000 to future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s); Craig D. Galli, ISO 14000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n a Nutshell, 9 Utah B.J. 15 (1996) (describing origin and mechanics of ISO 14000).

한 강화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¹⁰⁴⁾ 하지만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또 대부분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¹⁰⁵⁾ 이에 조직의 종류와 규모를 넘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ISO 26000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개념, 사회적 책임의 배경과 특성, 관련 원칙과 세부지침, 주된 목표, 조직 내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정책과 실행지침,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역할, 정보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이 있다. ISO 26000의 대상은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크게 ① 산업, ② 정부, ③ 소비자, ④ 근로자, ⑤ NGO, ⑥ 서비스·연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⁰⁶⁾ 또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① 지배구조, ② 인권, ③ 노동관행, ④ 환경, ⑤ 공정한 운영관행, ⑥ 소비자 문제, ⑦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로 나뉘며, 환경의 경우에는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환경, 생물 다양성 보호와 자연서식지 복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⁰⁷⁾

5. 주요국의 입법화 현황

(1) 미 국

미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는 1990년대 이전에는 큰 사회적 이슈 없이 학문적으로만 전개되었으나, 2000년대에 Enron사, WorldCom사 등의 대형회계비리사건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Sarbanes-Oxley법은

104) ISO 14001: Greening Management Systems, in Greener Manufacturing and Operations, Chap. 12 (J. Sarkis ed. 2001).

105) 광관훈, 계속(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사법,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2011.5, 161면 참조.

106) ISO, Discovering ISO 26000, at 3.

107) ISO, Id, at 6

302조에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기업의 책임, 401조에서 정기보고서 공시, 404조의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자 평가, 409조의 실시간공시 등의 공시관련 조항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¹⁰⁸⁾ 또한 Dodd-Frank법은 임원보수 공시조항 등을 강화하며 시장중심적 기업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¹⁰⁹⁾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환경·사회부문에 관한 정보 공개 촉진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Regulation S-K¹¹⁰⁾에서는 사업현황, 법적 절차, 경영진단 및 분석 등의 항목에서 환경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Regulation S-X¹¹¹⁾에서는 주주총회 의결 또는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모범사업회사법(MBCA) §3.01(13), §3.01(14) 및 §3.01(15) 과 ALI의 기업지배구조원칙 §2.0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¹¹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국내 규정으로 입법화하려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³⁾

(2) 일 본

일본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하여는 1950년대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며, 특히 2004년 9월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8) 15 USC §§7241, 7261, 7262, 78 m (l) (2012).

109) 김갑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증권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2, 169면.

110) 17 CFR § 229.101(Item 101); 17 CFR §229.103(Item 103); 17 CFR §229.303(Item 303).

111) 17 CFR §210(2012).

112) 중국 회사법 제5조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최준선, 기업의 부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2008.12, 884면 참조).

113) 영국의 Companies Act 2006 §172는 이사의 일반적 의무로 주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 근로자의 이익, 고객과의 관계, 지역사회와 환경 등 사회적 배려에 대한 요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란 단순한 자선활동에 그치는 것¹¹⁴⁾이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중시하고 가장 기초적인 법률 준수와 함께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공정한 노동기준, 인권, 인재교육, 안전위생, 지역사회공헌 등 광범위한 요소로 구성된 것’¹¹⁵⁾이라며, 기업 가치의 평가에 있어 그 요소를 장기적인 이익과 환경·노동 등 사회적 역할로 확대하였다. 이후 회사법 개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할 것인가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그 기업활동의 재량에 반하며, 적용범위상의 모호함 등의 이유로 입법화는 되지 않았다. 이후 2005년에 내부통제시스템의 회사법상 도입을 통하여 법률준수의 제도화를 통한 법률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하였다고 간주되고 있다.¹¹⁶⁾ 이 밖에 기업의 환경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환경부는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보전에 관한 방침, 목표, 계획, 경영 등의 상황이나 환경보전활동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3) 한 국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법제의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¹¹⁷⁾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정부차원

1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선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측면으로 보아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에의 공헌,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 기부행위 등 사회에 선량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유럽의 경우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 가지는 당연한 의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라고 한다(곽관훈, 앞의 논문, 166-167면 참조).

115) 經濟産業省, “企業の社會的責任(CSR)に關する座談會 中間報告書”(2004. 9).

<http://www.meti.go.kr/policy/economic_industrial/press/0005570/index.html>

116) 곽관훈, 앞의 논문, 169면 참조.

117) 미국은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 1986년 기업윤리행동원칙, 동년 부정청구법, 1989년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2001년 증권상장시 윤리경영의무화, 2001년 기업회계투자보호법(Sarbanes-Oxley Act) 등이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은 2001년 7월 CSR

의 준비가 2007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이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청 및 표준협회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ISO 26000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부입법의 형태로는 「산업발전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등을 고려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동법은 목적으로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지속성장가능과 국민경제발전 방향성에 포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 기본 취지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그 가운데 사회의 본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법 제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5장의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등에

Green Paper 발간, 2004년 10월 기업연례보고서 작성지침을 발표하였다. 영국은 2000년 7월 SRI 연금펀드투자 기준을 의무화하는 연금법을 개정하고, 2001년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정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기업책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프랑스는 2007년 노동조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01년 상장기업의 재무환경 사회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회사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2001년에는 상장기업의 연차재무보고서에 사회적 환경적 영향 내용의 포함을 의무화하는 신경제규제법을 제정하였고, 연기금 SRI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독일은 2001년 연기금 운용회상체 대해 윤리 환경 사회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이 밖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1999년 환경보고서의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중국은 2006년 중국기업의 CSR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동년 회사법개정을 통해 CSR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중신고용 규정과 파견근로 종료 시 경제적 보상 등 노동자 보호조항을 삽입하는 신노동법을 개정하였다.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동법에서는 목적으로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천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2조에서는 녹색성장 및 녹색경영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 조직 등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¹¹⁸⁾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ISO 26000과 같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동 법은 이 밖에 제3장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4장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제3장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

118)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 ISO 26000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2011, 74-75면 참조.

성·보급 및 지속가능성의 주기적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년 1월에 제정된 동법은 그 목적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고용창출, 취약계층 배려 등의 사회공헌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업 인증 및 혜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¹¹⁹⁾ 동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다 협의의 개념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나,¹²⁰⁾ 동법이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본다.¹²¹⁾

119)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120) 고동수, 앞의 보고서, 76면.

121) 이동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안암법학 제25집, 2007, 988면.

제 5 절 기후변화대응방안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1. 기업환경원칙의 필요성

미국 회사법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의 목적이 지나치게 협의로 주주 이익 극대화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나 의무 등은 모두 자율적인 연성규범으로 선택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법체제하에서 주주는 유한책임원칙에 따라 환경책임에 따른 부담에서는 제외되며, 이사 또한 주주이익극대화라는 원칙 하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기업 또한 환경에 대한 책임에서 궁극적으로는 파산 등의 제도를 악용하여 그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¹²²⁾ 이 때문에 미국은 기업환경원칙의 도입으로 회사법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이하 ‘EPA’라 함)¹²³⁾은 환경보호 장려를 위하여 대기과 수질, 토지법(air, water, and land laws)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지정 보건기준의 준수와 이를 시행하는 각종 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하고 있다. EPA는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제재수단인 벌금과 과태료만으로는 체계적인 기업환경 개선면에서 부족하므로 그 실효성면에서 미흡하기에 그 밖의 특히 기업 이어나 임원, 종업원의 책임 제한 등의 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되었다. 따라서 미국 연방의회는 기업의 환경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서 형법상 중죄로 취급하게 되었다.¹²⁴⁾ “기업경영진의 유책원칙¹²⁵⁾에 따라 비록 기업 경영진이 어떠한 활동에 직접 참

122) Jenny B. Davis, The Enron Factor, ABA J. 40, 42-43 (Apr. 2002).

123) 1970년 설립된 EPA는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전담하는 연방기관이다.

124) Richard J. Lazarus, Assimila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nto Legal Rules and the Problem with Environmental Crime, 27 Loy. L.A. L. Rev. 867, at 878- 82 (1994).

여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위반에 대해 개인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 된 것이다.¹²⁶⁾

하지만, 이와 같은 기업 경영진의 환경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체도의 체계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EPA 또한 환경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환경 리더십을 장려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오염방지를 장려하는데 있다”고 밝혔다.¹²⁷⁾ 동 프로그램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환경원칙과 모범시설프로그램¹²⁸⁾ 등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은 기업환경원칙에 공개적으로 가입하여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게 된다.

2. 기업의 환경 리더십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유도하는데 의무나 규제와 같은 방안만으로 부적당하다고 본다면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자율 규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기업환경 행동을 스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며, 이에 대다수 기업들도 환경 관리 전략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을 위하여 국제적 차원의 다양한 지침과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다.

125) Judson W. Starr & Thomas J. Kelly, Jr., *Environmental Crimes and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Time Has Come and tis Hard Time*, 20 E.L.R. 10096, 10101-04 (Mar. 1990).

126) *United States v. Dotterweich*, 320 U.S. 277, 64 S.Ct. 134 (1943); *United States v. Int'l Minerals & Chem. Corp.*, 402 U.S. 558, 91 S.Ct. 1697 (1971); *United States v. Johnson & Towers, Inc.*, 741 F. 2d 662 (3d Cir. 1984) (cited in George Van Cleve, *The Changing Intersection of Environmental Auditing, Environmental Law and Enforcement Policy*, 12 *Cardozo L. Rev.* 1215, 1226-27).

127) 58 Fed. Reg. 4802 (Jan. 15, 1993)

128) 모범 시설 프로그램에는 위험 완화 목표, 척도와 공적 책임, 기획, 친환경 상관습, 공동체 및 종업원 참여, 준법과 같이 6개 기준이 존재한다.

(1)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1920년 세계 기업의 상설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애틀랜틱시티(Atlantic City)에서 개최된 국제무역회의의 결정으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라 함)가 창설되었다. ICC는 국제 기업의 경제적 요소를 대변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토대로 세계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있다.¹²⁹⁾ ICC는 환경보호에 대해 기업이 환경성과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환경관리 16대 원칙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사내·외에서 경과를 측정 및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ICC 원칙은 아래의 분야에 적용된다. 최초 8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우선순위(지속가능한 개발의 최우선순위이자 핵심 결정요인으로 인정되는 환경 관리), 통합 관리(경영진 내부에서 친환경 기준의 시행), 개선 절차(법률을 출발점으로 하여 기업 행동을 개선할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사한 기준 적용), 직원 교육(핵심 요소로 교육과 훈련, 동기부여 채택), 사전 평가(신규 프로젝트나 시설 폐쇄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 영향을 적절히 평가), 제품 및 서비스(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 재활용의 제도화, 에너지 사용, 천연자원의 소비), 고객 통지(환경 기준에 관하여 일반에 주요 정보 제공), 시설 및 운영(효율적 에너지 및 재료 사용과 재생 에너지원, 잔류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참작하는 시설 개발과 설계, 운영 이행)이다.

ICC가 채택한 그 밖의 8개 원칙으로는 연구(기업과 관련된 원료와 제품, 공정, 배출량, 폐기물에 대한 환경 영향 관련 연구의 지원 및 지속), 예방적 접근방식(기술에 부합하기 때문에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마케팅, 사용 수정), 시공사 및 납품업체

129) 1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5th ed., Union of International Assoc. ed., 1988).

(기업을 대행하는 공인 대리인에 대해 환경 및 법률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납품업체의 유사한 준수를 장려하는 이러한 원칙의 채택 장려), 비상 대비(중요한 위험이 존속하는 분야의 개발 및 유지, 국경간 영향을 인정하기 위하여 주 및 지방 당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비상 대책), 기술 이전(산업부문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친환경 기술 및 관리 방법론의 이전에 기여), 공통된 노력에 기여(공공정책의 입안과 기업, 정부, 환경에 기여), 우려사항의 공개(일반인뿐 아니라 직원과의 대화 진행 및 유지, 운영과 제품, 폐기물, 서비스의 유해성과 영향에 관한 우려의 예상과 대응), 마지막으로, 준법과 보고(환경 성과의 측정과 정기 감사의 수행, 이해 당사자 전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2) 글로벌환경관리사업(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itiative, 'GEMI')

글로벌환경관리사업(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itiative, 이하 'GEMI'라 함)은 국제상공회의소와 유엔환경프로그램이 후원하는 프로젝트로 국제기업을 위하여 환경지침을 개발하였다. GEMI는 1992년 준법과 시스템 개발 및 시행, 일반 업무 기능에 대한 통합, 종합 품질 접근방식을 비롯하여 4단계로 환경성과를 취급하는 환경 자체 평가 프로그램(ESAP: Environmental Self Assessment Program)을 발행하였다.¹³⁰⁾

(3) 화학제조협회(Che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

화학제조협회(Che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이하 'CMA'라 함)의 책임 있는 관리 프로그램¹³¹⁾에 회원사는 업계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을 다루는 원칙에 동의하도

130) Friedman, supra note 10, at 96-99.

131) "Responsible Care: A Public Commitment" 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ow known as 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1300 Wilson Blvd., Arlington, VA 22209, (703) 741-5000 or at www.americanchemistry.com)

록 한다. 회원사는 본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CMA 회원으로 본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간주된다. CMA 위원회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일반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1989년 경영진실천원칙을 개발하였다. 환경, 건강, 안전 지도층으로 구성되는 공개자문위원회는 일반인들에게 안전과 신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화학업체들을 지원하며, 재계 지도층들은 연 1, 2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책임 있는 관리 요소시행 경험에 관하여 공유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규제와 영리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에 관하여 기업의 역할은 단지 기업지배구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영진 대부분인 이사들은 기업에 대하여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에 저촉되는 거래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행위가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면 이사의 행위는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가 환경오염 등 환경에 관한 손해에 대한 이유는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신속하며 적극적인 대응은 그 비용면에서 사후 손해보상이나 처리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문제와 이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에 관한 피해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행동기준에 관한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와 지침들을 고려할 때, 그 보호 정도는 미흡하기에 기업윤리에 환경윤리에 관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기업 환경 보호에 대해 준법과 기업문화, 효능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John Hopkins Medical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청정대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270억 달러를 지출할 때 의료비는 최대 100억

달러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²⁾ 이 같은 비용-편익 분석은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오염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에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영리성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영리성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와 행위들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태도의 변경은 강제적인 제도보다는 보다 환경 문제와 위험을 취급하기 위한 구조적 프로그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4. 기후변화와 기업 활성화

회사법은 기업의 영리추구행위를 보장하며, 이로부터 경제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또한 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환경에 관한 고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논의되었었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기업의 설립허가 취소는 현 회사법체제하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회와 대통령이 사베인스-옥슬리법을 통하여 재무공시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듯이,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환경 공시에 관한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사회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의 노력을 강화하고, 또 아울러 기업의 활성화가운데 기업환경원칙의 자발적 채택과 그 시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가운데 기업은 준법을 선도하고 다른 구성원을 위해 올바른 일을 수행하며 경쟁 사업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 효과가 바로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일 일면이라

132) Tebo, supra note 6, referencing John Hopkins study, at 40-41.

생각한다. 기후변화의 문제와 환경보호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에 관한 대안으로 기업의 기업환경원칙의 채택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환경규제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환경원칙은 준법을 토대로 주주의 우려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모범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기업은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기업환경행동에 대한 방향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기후변화와 금융 활성화

제 1 절 녹색금융의 의의

1. 환경금융의 필요성

녹색성장은 2005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구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s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¹³³⁾, 성장단계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빈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FI)에 의하면 ‘녹색(green)’이란 사회적·윤리적·환경적 관행(social, ethical and environmental practice)과 관련된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중 특히 환경지향적인(environmentally-oriented)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³⁴⁾ 즉, 녹색성장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패턴으로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자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경제·환경의 균형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³⁵⁾

이처럼 녹색성장은 지금까지의 산업발전 과정에 녹색기술·지식을 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재활용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자원 등을 확충하여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이 현재는 물론 향후 선진일류국가 건설 및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고려할 때 이를 중·장기

133) UNESCAP(2005) 참고.

134) UNEP Finance Initiative(2007) 참고.

135) 노회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자본시장연구원, 2010. 6, 9면.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공급 메커니즘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녹색금융, 환경금융이라 할 수 있다.

환경금융은 경제성장과 환경개선 및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인 금융으로 무엇보다 녹색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 혹은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 자원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생산활동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¹³⁶⁾ 환경금융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경제 전반의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은행을 비롯한 간접금융시장의 여신 지원과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와 녹색성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수단 제공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녹색지수의 개발이나 녹색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주로 자본시장의 금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환경 파괴활동에 자금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율적 심사·감시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대출기업의 환경법규위반여부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환경관리 수행을 여신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1990년대 미국에서 제정된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법안¹³⁷⁾과 배출권거래 제도 등이 있다.

136)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IT벤처 금융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Targeted Financing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노희진, 앞의 논문, 10면).

137) 기업이 환경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환경정화 비용을 대출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대부자책임규정.

이와 같이 환경금융은 세부적으로 녹색기업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녹색금융 상품화 개발 및 녹색투자자 육성, 환경위험을 고려한 여신 지원, 탄소배출권 및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환경개선과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부문은 녹색산업과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공급, 환경위험을 고려한 금융 지원, 탄소배출권 시장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경제주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경제에 중추적인 엔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금융 관련 협약들을 발효시키는 등 환경 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Rio Summit)에서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금융기관 선언문(Statement by Banks o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였고, 2009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녹색경제는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며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그린경제이니셔티브”를 통하여 7,500억 달러¹³⁸⁾를 녹색산업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에 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의 국제협약에서는 환경분야와 함께 금융지원에 관한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138) 이는 2009년 세계 전체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시책 수립¹³⁹⁾ 과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제¹⁴⁰⁾를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의 역할에 점차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을 추구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 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CSR 경영의 주요 요소로 환경개선을 유인하는 기업에 대한 녹색금융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환경금융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투자기회 발굴을 위하여 환경리스크 관리에 보다 주목하여야 하며, 이는 과거의 산업형 구조를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인 녹색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밑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 경제 성장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1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 의하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의 개설 및 거래활성화 등

140) 동법 제46조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허용량의 할당 방법, 등록·관리 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환경금융에 관한 국제협약

(1)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

UNEP FI는 UN 환경프로그램(UNEP)과 민간금융부문과의 독특한 국제 제휴로 1991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도이치(Deutsche)은행, HSBC 홀딩스, 닛웨스트(Natwest, 영국 4대 은행), 로얄 बैं크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 웨스트팩(Westpac, 호주은행)을 비롯한 상업은행 집단이 UN 환경계획에 동참하며 금융기관의 재무적인 성과와 환경 및 지속가능성 간의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UNEP FI는 약 180여개의 금융기관과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적 활동, 포괄적 업무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를 통해 금융기관 운영의 모든 수준에서 최상의 환경적 및 지속가능성 관행 채택을 확인·촉진·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⁴¹⁾

(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 라인(이하 'GRI')

GRI는 1997년 UNEP과 미국의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가 함께 설립한 국제기구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분야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재무보고서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세부화되고 표준화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GRI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기업이나 단체, 혹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통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¹⁴²⁾

141)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Environment_Programme_Finance_Initiative.

142) <https://www.globalreporting.org/resourcelibrary/G3.1-Comparison-Sheet.pdf>.

(3)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하 ‘ISO’) 26000

ISO 26000은 기업 이외에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에는 환경, 지배구조, 공정한 운영관행,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문제, 지역사회참여 등이 포함된다.¹⁴³⁾

이 중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판단과 운영은 환경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환경에 관하여는 공해방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

(4) 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

CDP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관하여 전세계 연기금 투자기관을 포함하여 금융·투자기관들을 대신하여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로부터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인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관련 이슈에 대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기업이다.¹⁴⁴⁾ CDP는 전세계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투자리스크나 투자기회에 있어 먼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부터 매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 위험과 기회, 가능성 및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리포트 발간 등 전세계 기업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¹⁴⁵⁾

143) http://www.iso.org/iso/iso_26000_project_overview.pdf.

144) 노희진, 「녹색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0. 6, 31면 참조.

145) <https://www.cdproject.net/en-US/Pages/HomePage.aspx>.

(5) Equator Principle

Equator Principle은 2003년 미국 워싱턴에 국제금융공사(IFC)와 10개의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World Bank에서 만든 환경·사회 정책 기준 준수를 위하여 만든 자발적 행동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개도국·선진국에 상관없이 1,000만달러이상의 사업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자문의 경우에 적용하며, 기존 시설을 개량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¹⁴⁶⁾

2011년 기준으로 ASN Bank NV, Banco Bradesco, Bank of America, Barclays plc, BNP Paribas, Citigroup Inc., Credit Suisse Group, HSBC Group, ING Group, KfW IPEX-Bank, Societe Generale 등 77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3. 미국의 환경금융

(1) Green Bank Act (Bills) of 2009

2009년 3월 발의된 Green Bank Act(Bills)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녹색은행의 설립을 위한 법이다.¹⁴⁷⁾ 동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내

146) <http://www.equator-principles.com/index.php/about-ep/about-ep>

147) Green Bank Act (Bills) Sec. 9801. (Green Bank)

(a) Short Title- This section may be cited as the “Green Bank Act of 2009”.

(b) 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re as follows:

- (1) To evaluate and coordinate financing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 (2) To provide loans, loan guarantees, debt securitization, insurance, portfolio insurance,

청정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녹색은행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¹⁴⁸⁾

and other forms of financing support or risk management to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3) To facilitate

(A) efficient tax equity markets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B) the financing of long-term clean energy purchasing by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not-for-profit entities.

(4) To foster

(A) the development and consistent application of transparent underwriting standards,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protocols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B) the creation of performance data that enables effective underwriting, risk management, and pro-forma modeling of financial performance of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to support primary financing markets and stimulate development of secondary investment markets for clean energy projects and energy efficiency projects; and

(C) the level of financing support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necessary to advance vital national objectives, including

(i) achieving energy independence from foreign energy sources;

(ii) abating climate change by increasing zero or low carbon electricity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capabilities;

(iii) realizing energy efficiency potential in existing infrastructure;

(iv) easing the economic effects of transitioning from a carbon-based economy to a clean energy economy;

(v) achieving job cre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vi) fostering long-term domestic manufacturing capacity in the clean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dustries; and

(vii) complementing and supplementing other clean energy efficiency legislation at the Federal or State level.

148) Green Bank Act (Bills) Sec. 3102A (Green Bonds)

(a) Initial Capitalization-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issue bonds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Green Bonds’) in the amount of \$10,000,000,000 on the credit of the United States to acquire capital stock of the Green Bank(established under section 9801 of this title), of which not more than \$200,000,000 shall be used for costs that the Green Bank incurs for its first year in order to provide loans, loan guarantees, debt securitization, insurance, portfolio insurance, and other forms of financing support or risk management for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s and

동 법안에서 말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란 ㉠ 태양열, ㉡ 풍력, ㉢ 지열, ㉣ 바이오매스, ㉤ 수력발전, ㉥ 해양, ㉦ 연료 전지, ㉧ 고성능 배터리, ㉨ 탄소 포집 및 격리, ㉩ 차세대 바이오연료, ㉪ 핵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 변환, 저장, 가열, 냉각 등에 관한 생산절차 또는 에너지시스템이나 기술 등의 개발을 말한다.¹⁴⁹⁾ 또한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란 이전에 달성하였던 수준의 결과물을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면서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이전에 발생했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기술개발, 기능 또는 평가 등을 말한다.¹⁵⁰⁾ 녹색은행은 그 운영에 있어 미국 연

qualified energy efficiency projects (as such terms are defined under such section). Stock certificates evidencing ownership in the Green Bank shall be issued by the Green Bank to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he extent of payments made for the capital stock of the Green Bank.

149) Sec. 9801. (Green Bank) (c) Definitions- In this section:

- (1) CLEAN ENERGY PROJECT- The term ‘clean energy project’ means any electricity generation, transmission, storage, heating, cooling, industrial process, or manufacturing project whose primary purpose is the deployment, development, or production of an energy system or technology that avoids, reduces, or sequesters air pollutants or anthropogenic greenhouse gases, including the following:
- (A) Solar
 - (B) Wind
 - (C) Geothermal
 - (D) Biomass
 - (E) Hydropower
 - (F) Ocean
 - (G) Fuel cell
 - (H) Advanced battery
 - (I)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 (J) Next generation biofuels
 - (K) Nuclear

150) Sec. 9801. (Green Bank) (c) Definitions- In this section:

- (2)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 The term ‘qualified clean energy project’ means a clean energy project that
- (A) is carried out domestically within the territorial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 (B) stays current on interest and debt payment obligations;

방정부가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이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¹⁵¹⁾

동 법안에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100억 달러 상당의 녹색채권(Green Bond)을 재무부장관이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¹⁵²⁾ 이러한 녹색은행의 설립은 미국 내에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용이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관한 시스템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보호와 더불어 미국 기업들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2)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하 ‘CERCLA’)

CERCL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기업이 환경오염을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환경정화비용을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대부자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즉, 대출금융기관이 대출

(C) pays wages in accordance with subchapter IV of chapter 31 of title 40, United States Code (commonly referred to as the Davis-Bacon Act);

(D) if for nuclear power, is funded by the Bank only after all other existing Federal financial support has been expended; and

(E) satisfies any other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Bank and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3) ENERGY EFFICIENCY PROJECT- The term ‘energy efficiency project’ means any project, technology, function, or measure that results in the reduction of energy use required to achieve the same level of service or output prior to the application of such project, technology, function, or measure, or substantially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relative to emissions that would have occurred prior to the application of such project, technology, function, or measure.

151) Green Bank Act (Bills) Sec. 9801 (d) (Green Bank)

(1) ESTABLISHMENT OF CORPORATION- There is established a corporation to be known as the Green Bank that shall be wholly owned by the United States.

(2) INDEPENDENT CORPORATION- The Bank shall be an independent corporation. Neither the Bank nor any of its functions, powers, or duties shall be transferred to or consolidated with any other department, agency, or corporation of the Government unless the Congress provides otherwise.

152) Green Bank Act (Bills) Sec. 3102A (Green Bonds)

심사를 할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사항까지 철저히 조사하거나 환경과 오염 관련 여부가 대출관련 리스크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법에 따르면, 대출금융기관이 투자대상기업의 환경리스크를 철저하게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해 준 경우 설령 해당 기업이 토양오염을 야기하더라도 오염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환경정화비용을 유류세 등으로 조성된 신탁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유해물질의 발생에 관여한 모든 잠재적 책임을 기업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¹⁵³⁾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조건으로 기업의 환경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대응을 장려하는 것으로 소극적 의미의 환경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4. 일본의 환경금융

2009년 4월 20일 일본 환경성은 「녹색경제와 사회개혁(緑の経済と社会の改革)」을 통하여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등 환경비즈니스시장을 120조엔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고용은 280만명까지 확대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전에도 2002년 3월에는 「금융업에 있어서의 환경배려행동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金融業における環境配慮行動に関する調査権急報告書)」, 2006년 7월에는 「환경 등을 배려한 현금흐름의 확대를 향하여(環境等に配慮した「お金」の流れの拡大に向けて)」라는 보고서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2007년 5월에는 「아름다운 별에의 초대 : 3개의 제안·3개의 원칙(Invitation to Cool Earth 50)」, 2008년 7월에는 「저탄소사회구축행동계획(底炭素社会づくり行動計画)」을 통하여

153) David M. Bearden,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A ummary of Superfund Cleanup Authorities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4, 2012.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¹⁵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한 간담회 제언 : 저탄소사회·일본을 목표로(地球温暖化問題に関する懇談会提言 : 底炭素社会・日本を目指して)」에서 「저탄소사회구축행동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는 「환경비즈니스 등에 자금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의 정비(環境ビジネス等に資金を流れやすくするための基準と仕組みの整備)」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자본시장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환경금융(녹색금융)에 대하여 그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 있는 투자원칙의 준수, 녹색금융을 위한 활동상황의 공표촉진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융자나 펀드 등 금융기관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¹⁵⁵⁾

제 2 절 기후변화와 사회책임투자

1.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사회책임투자란 투자대상 기업과 투자수준 결정에 있어 통상의 재무적 지표에 추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수준까지도 감안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¹⁵⁶⁾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투자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어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UN은 ‘사회책임투자원칙’을 투자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ESG(Environmental, Social,

154) 全国銀行協会 「金融業における環境事業活動の現状と銀行に期待される役割」, 2009.1, 4면.

155) 全国銀行協会, 앞의 논문, 5면.

156) 연태훈, 최근의 사회책임투자(SRI) 동향과 시사점, 금융포커스 21권 9호(2012.2), 한국금융연구원, 12면.

Governance)’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투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재화를 분배하는 것만이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환경오염이나 노동력착취 등을 통한 영리창출행위는 오히려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이익 극대화 개념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회책임투자개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¹⁵⁷⁾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문제 등 환경과 에너지문제 등에 따른 부분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종래의 재무분석에 의한 투자기준에 추가로 사회·윤리와 환경적 요소까지 평가대상으로 정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선별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사회책임투자를 구성하는 주체로는 기업활동의 사회적 측면을 조사·평가하는 기업평가단체¹⁵⁸⁾, 그러한 정보를 받아서 투자신탁을 조성하여 판매하는 펀드¹⁵⁹⁾,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 등이 있다.¹⁶⁰⁾

이와 같이 사회책임투자에 관련된 펀드들은 투자신탁회사들이 조사·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펀드들을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연기금 등의 기금을 조사·평가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기준이나 의결권행사시 지침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여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157) George Djurasovic, The Regulation of Socially Responsible Mutual Funds, 22 Iowa J. Corp. L. 257, 258(1997).

158) 미국에서는 KLD, ICCR 등.

159) 미국에서는 Calvert Social Equity, Green Century Equity 등

160) 양만식,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기업법연구 제24권 제2호(통권제41호), 202면.

투자를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책임투자방식은 기업의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하여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합리적인 투자방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비재무적 지표의 실현 추구방식은 사회적, 환경적 해악으로 지탄 받는 기업을 소극적으로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소극적 검토방식과 사회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적극적 검토방식,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등을 활용하여 투자기업을 감시하고 의결권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권행사 방식 등이 있다.¹⁶¹⁾

2. 사회책임투자의 분류

가. 광의의 사회책임투자

사회책임투자는 그 주체, 대상, 형태 등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책임투자란 상장주식의 취득·소유를 전제로 하는 모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사회책임투자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관련 주식 등도 포함된다.¹⁶²⁾

사회책임투자의 분류		투자의 형태
광의의 사회 책임 투자	광의의 사회책임투자 (상장주식의 취득·소유를 전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신탁(성장주펀드)(온난화관련주식펀드 등)
	협의의 사회책임투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신탁(사회책임투자펀드)(에코펀드 등)
	ESG ¹⁶³⁾ 책임투자	기관투자자에 의한 조건검색운용·주주행동

161) 정경영, 앞의 논문, 142면.

162) 양만식, 앞의 논문, 205-206면 참조.

사회책임투자의 분류		투자의 형태
Social Fiance(상장주식의 취득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음)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판단에의 ESG요인의 편입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상품(환경관련 상품)
		상업은행이나 사회적 목적을 특화한 전문은행에 의한 용자(미국의 커뮤니티개발은행, 네덜란드의 토리오도스 은행 등)
		조합원 등에 의한 회원 등에 용자(미국의 커뮤니티크레디트유니온 등)
		펀드에 의한 투용자(미국의 커뮤니티개발론펀드·벤처캐피털펀드 등)
		NPO에 의한 투용자(일본의 NPO펀드 등)

나. 협의의 사회책임투자

기업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주주와 채권자에서 정부, 근로자, 종업원, 거래회사, 소비자, 환경, 지역사회까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일례로 2015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와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성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리스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활동의 주체와 범위 확대에 인하여 기업 투자에 대한 개념 또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UNEP-FI의 책임투자원칙은 ① 투자분석

163) E는 Environment, S는 Society, G는 Governance이다.

이나 의사결정과정에 ESG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② 행동적인 주주로서 주식소유의 방침이나 실행에 ESG문제를 포함시키며, ③ ESG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공시를 투자대상주체에 요구하는 등의 6개 항목을 제언하고 있다.¹⁶⁴⁾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UN은 UNEP-FI 나 UN글로벌 컴팩트, 기후변동협약(UNFCCC)체결국 회의 등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일본 북해도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환경악화와 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 방식 등을 통한 관심제고를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투자판단에 있어 글로벌적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나 기후위험공개나 회사들을 상대로 이산화탄소배출량에 관한 조사등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란 Carbon Disclosure Project(CDP)로 영국에 본부를 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한 금융투자기관 주도의 비영리단체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프로젝트 중 하나를 말한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인식한 세계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기후변화의 기업적 의미에 대해 협력하도록 국제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⁵⁾ 참여기업이 자사의 공급사슬기업에까지 탄소경영과 관련된 정보(지배구조, 기후변화 이슈관련 위험과 기회, 전략, 온실가스 배출 회계, 커뮤니케이션)를 공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2003년부터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경영정보를 요청, 기업들의 답변을 분석해 보고서로 작성해왔다. CDP한국위원회는 2010년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등 전 세계 4500여 기업에 기후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질문서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답변서는 9월 보고서에 공개되었다. CDP 2010에 서명한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미래

164) 양만식, 앞의 논문, 207면.

165) Carbon Disclosure Project, www.cdproject.net

에셋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약사자산운용, KDB자산운용, NH-CA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템피스트투자자문, Q Capital Partners,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다.¹⁶⁶⁾

3. 주요국가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가. 미 국

미국의 사회책임투자는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었으며, 환경문제에 관한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환경문제의 경우에는 1978년 뉴욕주의 러브커넬의 토양오염사건, 1979년 스리마일섬 원자력폭발사고, 1984년 인도보팔시의 미국 화학기업공장의 폭발로 발생한 독가스누출사고 등을 통하여 점차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¹⁶⁷⁾ 이후 1989년 3월 엑슨 발데즈호 사건은 미국 내 환경문제에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의 사회책임투자의 조사 및 시행단체였던 SIF(Social Investment Form)가 다양한 환경그룹과 함께 설립한 환경단체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는 본 사건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원칙인 CERES Principles를 공표하였다. 동원칙은 기업의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자집단의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1990년대 이후 점차 보편화되어 졌다.¹⁶⁸⁾ CERES원칙은

166) 양만식, 앞의 논문, 각주17 참조.

167) Russell Spark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John Willy & Sons, LDT, 2002, at 58-59.

168) Elizabeth Glass Geitman and Andrew E. Skroback, *Environmental Activism And The Ethical Investor*, 22 J. Corp. L. 465 (1997) (wherein the observation was made that “voluntary disclosure is increasing because it allows corporations to tap into powerful public sentiment. Shareholder concerns for the environment have also increasingly influenced corporate boards through investors' use of shareholder proposals.”) See NRDC

1992년 4월 28일에 CERES 이사회에 의해 개정안이 채택되었는데, 3월과 4월에는 BodyShop과 Timberland Company 등이 동의하였고, 그들은 Sun Company와 같이 2월에 CERES 리포트를 비준한 500개의 재벌 기업이 되었다.¹⁶⁹⁾ CERES 리포트는 연간 발간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회사들의 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의도로 제작되고 있다. 사모펀드와 투자자들은 전형적인 CERES 리포트의 수혜자들이라 할 수 있다.¹⁷⁰⁾

v. SEC, 389 F. Supp. 689 (D. D.C. 1974). Compare *Levine v. NL Indus.*, 926 F.2d 199 (2d Cir. 1991) (involving litigation for environmental disclosure by a shareholder against a public company).

169) “The Body Shop, Timberland Sign CERES Principles,” 4 BATE (May 1993).

170) The Principles are:

1. Protection of the Biosphere

We will reduce and make continual progress toward eliminating the release of any substance that may cause environmental damage to the air, water, or the earth or its inhabitants. We will safeguard all habitats affected by our operations and will protect open spaces and wilderness, while preserving biodiversity.

2.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We will make sustainable use of renewable natural resources, such as water, soils and forests. We will conserve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through efficient use and careful planning.

3. Reduction and Disposal of Wastes

We will reduce and, where possible, eliminate waste through source reduction and recycling. All waste will be handled and disposed of through safe and responsible methods.

4. Energy Conservation

We will conserve energy and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of our internal operations and of the goods and services we sell.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use environmentally safe and sustainable energy sources.

5. Risk Reduction

We will strive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isks to our employees and the communities in which we operate through safe technologies, facilities and operating procedures, and by being prepared for emergencies.

6. Safe Products and Services

We will reduce and, where possible, eliminate the use, manufacturing or sale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cause environmental damage or health or safety hazards. We will inform our customers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our products or services and try to correct unsafe use.

나. 일 본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책임투자가 198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활발히 시행된 것은 1999년 ‘에코펀드’의 발행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국이나 90년대에 새로운 기업평가의 기준으로 시작된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환경 등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인기를 얻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⁷¹⁾ 이후 2003년 스미토모투자신탁은 기업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를 개발하여 재무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¹⁷²⁾

7. Environmental Restoration

We will promptly and responsibly correct conditions we have caused that endanger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To the extent feasible, we will redress injuries we have caused to persons or damage we have caused to the environment and will restore the environment.

8. Informing the Public

We will inform in a timely manner everyone who may be affected by conditions caused by our company that might endanger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We will regularly seek advice and counsel through dialogue with persons in communities near our facilities. We will not take any action against employees for reporting dangerous incidents or conditions to management or to appropriate authorities.

9. Management Commitment

We will implement these Principles and sustain a process that ensur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Chief Executive Officer are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olicy. In selecting our Board of Directors, we will consider demonstrated environmental commitment as a factor.

10. Audits and Reports

We will conduct an annual self-evaluation of our progress in implementing these Principles. We will support the timely creation of generally accepted environmental audit procedures. We will annually complete the CERES Report, which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171) 곽관훈, 사회책임투자(SRI)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비교사법 제13권 2호(통권33호), 2006, 472-472면 참조.

172) 곽관훈, 앞의 논문, 473면 참조.

4. 사회책임투자와 수탁자의 책임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신탁법상 수탁자는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충실의무와 같은 이익충돌 방지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가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신중한 수탁자의 의무를 지닌다고 한다. 즉, 연금수탁자에 대해 연금플랜 회원의 이익에 반하여 이익이 충돌되는 거래행위에 관여할 수 없으며, 투자포트폴리오의 관리에 있어서도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러한 주요 의무를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라 한다.¹⁷³⁾ 이러한 수탁자의 의무는 영국 신탁법상 특정 자산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익 보호를 위하여 수탁자는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신중한 수탁자의 원칙은 투자판단에 있어 그 결정 과정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주의깊고 신중하게 투자된 경우에는 그 성과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연방법과 주법 또한 신중한 수탁자의 원칙에 관하여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평가할 것, 개별적인 자산의 수익극대화가 아니라 그 펀드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할 것,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 사후가 아니라 그 투자가 선택된 시점에서 투자의 신중성을 판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¹⁷⁴⁾ 이러한 신중한 수탁자의 원칙을 환경과 사회문제와 결부시켜 고려하여 이를 무시하는 결정에 대하여 수탁자의 의무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 생태계와 인권 등의 문제가 점

173) 한철, 연금기금과 사회책임투자(SRI)의 법리, 경영법률, 2010, 191면.

174)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Third) of the Law Trusts: Prudent Investor Rule (Washington DC: ALI, 1990) 8 (section 227).

차 증대되고 중요시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투자 결정요소임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문제들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에 있어 비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⁷⁵⁾ 따라서 투자자문가와 컨설턴트들은 수탁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위험도 고려해야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대하여 신중한 수탁자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⁷⁶⁾

제 3 절 환경금융과 자본조달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하여 환경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녹색산업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녹색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¹⁷⁷⁾ 이러한 녹색금융은 크게 지원과 규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발적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들에게 특정 혜택을 부여하는 ‘녹색금융 인센티브’이며,¹⁷⁸⁾ 두 번째는 환경리스크가 발생함으로써 기인할 수 있는 손실을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만들어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환경금융 리스크 관리’이다.¹⁷⁹⁾

175) A. Dlugolecki, Climate Change and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UNEP Finance Initiatives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2002, at 44.

176) Carbon Disclosure Project, www.cdproject.net.

177) 임대웅 외(2009), 「녹색금융」, 이팩스코리아, 2009, 57-59면.

178) 대부분의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녹색금융정책으로 조세감면 또는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인센티브 정책이다. 특히 요즘 녹색산업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을 제공하고 그린카, 그린홈, 그린빌딩 등 친환경 상품 및 관련 프로젝트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조봉현, “중소 사업장의 녹색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금융연구, 2011, 39면).

179) 이는 규제적 특성이 강한 정책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환경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든지, 사업장별로 환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여신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들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환경·에너지 문제에 관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로 10년간 녹색에너지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로부터 50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U의 경우에는 2009년에 EU 결속정책으로 환경을 고려한 녹색산업에 1,050억유로를 투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EU가 전세계적으로 녹색기술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금융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린카 등 친환경 상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1. 캐나다의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캐나다의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이하 'SDTC')는 캐나다 정부가 국민에게 건강한 환경과 양질의 삶을 구현해 주기 위하여 10억 5천 달러를 투입하여 설립한 독립기관으로 2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SD Tech Fund로 기후변화, 공기의 질, 수질 및 토양에 대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5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다른 하나는 NextGen Biofuels Fund로 차세대 재생가능 연료의 대규모 생산설비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는 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¹⁸⁰⁾ SDTC는 그 지원대상을 공공기관, 학교, NGO, 기업 등으로 하고 있다.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나, 이와 반대로 친환경에 반대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80) 조봉현, 앞의 논문, 44면 참조.

2. 영국의 환경금융지원제도

초기 환경정책과 녹색산업 관련 컨설팅 회사인 영국의 Climate Change Capital(이하 ‘CCC’)은 2005년 UNFCCC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투자를 위한 펀드 구성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펀드 등만을 다루는 녹색자산운용사이다. CCC는 기존 컨설팅 조직으로 CDM 투자를 시작으로, CDM 사업이 활발한 중국 북경에 지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CDM사업을 추진하였다.¹⁸¹⁾ CDM사업에 있어서는 현재는 중국, 인도 시장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한국 등 동남아시아를 목표로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2011년 5월 23일에 30억 파운드 규모의 Green Investment Bank(이하 ‘GIB’)를 설립하였다.¹⁸²⁾

동 은행은 2015년에는 150억 파운드의 규모로 성장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 해양풍력발전, 친환경폐기물 관리와 같은 녹색사업과 같이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과 기업에 있어 금융 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 Alex Salmond 총리는 2012년 10월 10일에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의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1억 300만 파운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기금출범을 발표하였다. 이번 투자기금은 해양 에너지와 신재생 열에너지 기술 등과 같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되었으나,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야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투자기금은 영국의 녹색투자 은행이나 그 밖의 청정기술 관련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⁸³⁾

181) 이후 탄소금융, 사모주식,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다(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51면 참조).

182)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1/may/23/clegg-unveils-green-investment-bank>

183) <http://www.businessgreen.com/bg/news/2216101/scotland-launches-multimillion-pound-fund-to-boost-green-investments>

지난 2012년 11월에는 영국 정부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GIB에서 폐기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8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즉, 투자는 Foresight Group과 Greensphere Capital에서 관리하게 되며, 주로 폐기물 재처리, 재가공 시설물, 사전 처리 그리고 폐기물에서 에너지 추출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다.¹⁸⁴⁾

3. 프랑스의 환경금융지원제도

프랑스의 BNP Paribas에서는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상 모든 항목에서 환경적 요소와 윤리적 요소를 고려하며, 특히 CIB Sustainable Development Team에서는 투자결정시 프로젝트 파이낸스팀에 Equator Principle 적용여부에 따라 투자결정 여부를 정하고 있다.¹⁸⁵⁾ 또한, Societe Generale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프랑스 개발청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투자인증을 위하여 녹색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우대대출을 시행하고 있다.¹⁸⁶⁾

이 밖에 Founds de Garantie des Investissements de Maitrise de l'Energie (이하 'FOGIME')는 중소기업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지속가능성 분야의 투자에 특화된 펀드를 말한다. 이에 대한 전체예산은 1,780만 유로에 이르며, 중소기업개발은행인 BDPME(Banque de Development des Petiteet Moyens Enterprises)가 940만 유로, 환경·에너지관리국인 ADEME(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Energie)가 840만 유로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¹⁸⁷⁾

184)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

185) 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48-49면 참조.

186) 아울러 2006년에는 Rhodia사와 합작으로 탄소금융을 위한 Orbeo사를 설립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CER을 판매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탄소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발굴·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50면 참조).

187) 조봉현, 앞의 논문, 45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40%인데 반하여, FOGIME는 최대 70%까지 보증하며, 기후보호 분야 중 재생가능에너지에 44억 유로, 에너지 효율에 6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FOGIME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보증한다는 것이며, 대출은 최대 75만 유로까지 가능하다.¹⁸⁸⁾ FOGIME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최초 2년간 대출액의 0.85%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했으나, 보증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0.60~0.45%까지 하락하였다.

4. 일본의 환경금융지원제도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활동 혹은 시설투자 등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금리나 수수료 등의 조건을 우대하는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이 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는 Eco Action 21¹⁸⁹⁾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하는 경우 환경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Eco Action 21은 환경성이 환경경영 시스템을 갖추어 환경활동보고서 작성 등 환경보호활동을 실행한 기업에 대하여 심사·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친 후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Eco Action 21에 금융지원을 위해서 기업은 먼저 환경오염가중도에 대한 자가체크를 실시하여 자사의 환경활동, 환경포지셔닝에 대하여 계수적·정량적으로 기업 스스로 평가를 한 후, 환경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Eco Action 21 지역 사무국에 신청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¹⁹⁰⁾ Eco Action 21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등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여 이에 대한 실천

188) 단, 은행과 중소기업 모두가 FOGIME의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9) 일본 기업이 효과적·효율적인 환경보호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개선결과를 공표하도록 환경성이 1995년에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190) 조봉현, 앞의 논문, 40-44면 참조.

을 도모하는 제도로 Eco Action 21에 인증·등록되었거나 전망되는 기업들은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지원이 가능하며,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도입에 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자금에 있어서 Eco Action 21 인증 취득 비용과 녹색 설비 대여비용 등의 경우에는 특별이율이 적용된다.¹⁹¹⁾

녹색금융상품에 관하여는 시가은행이 만든 ‘카본 오프셋 정기예금’이 있다. 이는 정기예금금액의 일정비율(0.1%)분의 배출권을 은행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이를 정부에 이전하는 것이다.¹⁹²⁾ 이 밖에 환경을 테마로 하는 투자상품으로는 친환경펀드, 즉 ‘에코펀드’가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의 일환으로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대응상황과 이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성장성 및 장래의 주가상승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 1999년 8월 닛코증권이 ‘닛코에코펀드’를 출시한 이후 일본에서는 SRI를 기초로 하는 펀드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¹⁹³⁾ 이 밖에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에게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녹색경영 우대 금융상품인 미쓰이 스미토모은행의 「SMBC-ECO론」도 있다.¹⁹⁴⁾

191) [Eco Action 21 환경·에너지 대책자금]

용자대상	CO ₂ 배출량 감축(폐열에너지 회수설비, 옥상 녹색화), 폐기물 배출량 감축(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총배수량 감축(빗물저장탱크) 등	
지원 기간	시설 자금	1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운전 자금	5년 이내로 최장 7년까지(거치기간 1년 이내로 최장 2년까지)
지원한도	중소기업 사업의 경우 7억2천만엔 (운전자금일 경우 2억5천만엔), 국민생활사업은 7억2백만엔	

(조봉현, 앞의 논문, 42면 표 참조)

192) 김정인, 일본의 배출권 제도와 녹색 금융의 현황, 12면.

193) 장미화, 한국·일본 은행들의 녹색금융 추진 비교와 시사점, 신한은행, 2009, 27면 참조.

194) [SMBC-ECO론]

제 4 절 기후변화와 수퍼펀드(Super Fund)

1. 미국의 포괄적 환경책임대응보상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1) 입법 배경

1970년대까지 의회는 미국에서의 오염의 근원을 규제하기 위해 몇몇의 환경법을 제정했었으나, 자연 환경에서 야기되는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오염책임까지 포섭하는 법률을 제정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후반 뉴욕의 ‘Love Canal’과 미주리의 ‘Times Beach’와 같은 심하게 오염된 장소의 발견은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있어 연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의회는 연방정부가 미국의 오염된 장소를 정화하도록 승인하고 ‘잠재적으로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정화비용에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오염 장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0년에 미국의 포괄적 환경책임대응보상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이하 ‘CERCLA’라 함)을 제정하였다. CERCLA는 이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규정을 기준으로 ISO14001, Eco Action 21 등 환경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도쿄도의 지구온난화 대책보고서 제도에 근거해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 2년이상 운영되었으며,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지점에서 거래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 - 최근 결산기에 채무초과가 없고, 신청시점에 세금미납이 없어야 함
융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5천만엔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지원가능 - 금리는 1.975%부터이며 변동금리이고, 각종 금리우대제도 있음 (일반적인 비즈니스 셀렉트론 대비 최대 0.25% 우대한 금리 적용)

(조봉현, 앞의 논문, 43면 참조).

권한들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환경청이 관리하는 superfund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CERCLA는 유출이 발생한 시설의 과거와 현재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재정적으로 정화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폭넓은 책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위한 폐기물 처분 장소에서는 폐기물의 배출자가 처분을 위해 처분 장소로 보내야 하며, 처분을 위한 장소를 선정한 폐기물의 운반자 또한 정화비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정화를 위해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CERCLA는 연방정부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화비용을 조달하도록 승인하였다. 연방정부에 의해 발생한 이러한 비용은 “orphan shares”라고 한다. CERCLA의 폭넓은 책임 계획은 환경오염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납세자가 정화비용의 부담을 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초래한 행위에 관여했음지도 모르는 모든 당사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책임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오염유발자가 자신이 야기한 환경에 끼친 피해에 관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원리(‘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불리는)에 근거를 두고 있다.

CERCLA는 잠재적으로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돈을 지불할 수 없거나 발견될 수 없는 오염된 장소에서 연방정부가 정화조치를 하는 것의 자금을 위해 유해물질 superfund 신탁기금을 수립하였다. 오염된 장소의 정화를 위한 자금을 위한 superfund 신탁기금 돈의 가용성여부는 의회에 따라 정하여 진다.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 시설에서의 잠재적으로 책임있는 당사자들로서 연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볼 때, 연방시설의 정화는 superfund 프로그램에 따라 superfund 신탁기금의 운영자금으로 비용이 마련되지 않는으나, 시설에 책임을 지는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된 다른 연방의 돈에서 그 비용이 마련된다. 환경청은 잠재적으로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행하

거나 정화조치의 비용을 스스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나중에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로부터 그 돈을 구상하게 된다(운영기관에 의해 선불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연방시설의 정화는 예외를 뒀).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돈을 지불할 수 없거나 발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정된 superfund 돈을 오염된 장소가 위치한 주와의 비용분담 협정에 따라서 오염된 장소의 정화 비용의 orphan shares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둔 것이다.

각각의 장소에서 오염물질 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각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비록 CERCLA는 정화 결정에 이르는 일반적 과정을 정하고 있으며, 더 상세한 사항은 환경청 법규와 기관 지침에 따라 정하여 진다.

(2) 주요 개정 사항

의회는 법률의 정화 권한의 적용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고 오염에 이르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오염된 장소의 폐기물에 특정한 양이나 형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의 특정 범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경감을 규정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대한 CERCLA를 개정했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해체된 군사훈련 연습장의 폭발되지 않은 포의 정화, 그리고 연방의 소유권에서 양도될 때, 오염된 연방의 재산의 정화를 위한 책임과 같은 연방시설에서의 독특한 정화를 할 때의 경우도 다루고 있다.

1986년에 제정된 SARA는 연방시설이 연방이 아닌 시설과 같은 정도로 CERCLA의 정화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했고, 다양한 대응, 책임, 그리고 법의 이행 규정을 개정하였다. SARA는 또한 1991년 회계연도 동안에 환경청의 superfund 프로그램을 위한 책임의 권한을 연장했고, 미국의 유효하고 해체된 군 시설에서의 오염을 다루기 위하여 DOD 내에 별개의 DER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이 밖에 1990년에 제정된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의 제6장은 환경청의 superfund 프로그램을 위한 책임의 권한을 1994년 회계연도까지 연장했고, 제11장은 산업에 대한 특별세를 거두는 권한을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비록 재승인하는 법안이 다양한 의회에서 도입되었지만, superfund 신탁기금을 위한 조세당국은 지금까지 갱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청의 superfund 프로그램을 위한 책임의 권한도 연장하지 못하였다. 대신에, 의회는 매년 하는 예산 절차를 통해 superfund 프로그램을 주로 일반 재무부 수입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유지하였다. 의회는 DER프로그램의 설립 초기부터 매년 이 프로그램에 승인하고 자금을 책정해 왔는데, 대부분의 자금은 판매 혹은 정화비용을 마련하는 폐쇄된 군 기지의 임대로부터 얻은 수입을 제외하고는 일반 재무부의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1992년에 the Community Environmental Response Facilitation Act는 유해물질이나 유류제품이 유출되지 않은 잉여 연방 재산의 오염되지 않은 구획의 양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CERCLA의 연방시설 규정을 개정하였다. 더 나아가 1997년 회계연도의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제334조는 만약 재산 양도 이후에 의도된 사용을 위해 충분히 정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 정화가 완료되기 전에 오염되지 않은 잉여 연방 재산의 양도를 허용하기 위하여 CERCLA를 개정하였다.

기타 개정은 당사자들의 특정 범주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CERCLA의 책임 계획의 공정성을 다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1996년 the Asset Conservation, Lender Liability, and Deposit Insurance Protection Act는 특정 수탁자와 금융대출기관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CERCLA를 개정하였고, 1999년에 the Superfund Recycling Equity Act는 만약 자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대신 처분하거나 처분

이 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배출자와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 자재의 운반자를 CERCLA에 따르는 정화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도록 정하였다. CERCLA을 따르는 배출자와 운반자의 잠재적 책임이 재활용하는 데에 있어 방해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에 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는 (1) 엄청 작은 양의 폐기물이나 도시폐기물(무해한)을 배출하는 사람, (2) 단지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된 인접한 재산으로부터의 이주의 결과로 오염된 재산의 소유자, 그리고 (3)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유권을 획득하기만 하면 잠재적인 정화 책임을 지는 것 때문에 오염된 재산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를 위한 정화 책임으로부터의 경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만약 “결백한” 소유자가 기존에 오염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산을 구입했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염된 재산의 “결백한” 소유자를 정화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였다.

법률에 의해 요구되듯이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 인접한 재산 소유자, 혹은 ‘결백한’ 토지소유자와 같이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획득하기 전에 재산을 선사용 할 때 ‘all appropriate inquiry’를 행해야 하고, 잠재적이고 해로운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을 획득한 후에는 ‘reasonabel steps’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당사자는 그들이 CERCLA에 따라서 취한 더 광범위한 정화조치를 위한 책임에서 면제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 재산의 오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980년에 제정된 CERCLA와 위에 명시된 법의 주요 개정은 다음과 같다.

<CERCLA와 법의 주요 개정>

Year	Title of Statute	Public Law Number
1980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P.L. 96-510
1986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	P.L. 99-499
19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P.L. 101-508, Title VI, § 6301, Title XI, Subtitle B, Part IV, § 11231
1992	Community Environmental Response Facilitation Act	P.L. 102-426
1996	Asset Conservation, Lender Liability, and Deposit Insurance	P.L. 104-208, Division A, Title II, Subtitle E
1996	Protection Act	P.L. 104-201, § 334
199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7 Superfund Recycling Equity Act	P.L. 106-113, Appendix I, Title VI
2002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P.L. 107-118

2. 환경책임에 관한 연방정부의 대응

(1) 유해물질 유출에 관한 통보

CERCLA의 제104(a)조항은 대통령이 유해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 혹은 국민 건강과 복지에 임박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물질에 특별히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하였다.¹⁹⁵⁾ CERCLA의 제115조항에 의해 승인되었듯이¹⁹⁶⁾, 대통령은 이를 행정명령에 의해 CERCLA의 대응 당국을 환경청과 다른 연방기관에게 위임하였다.¹⁹⁷⁾ 환경청은 토양에 대한 오염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미국 해안 경비병은 내륙에 있는 항구, 호수, 그리고 미국 연안수로의 유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유출이 연방시설에서 발생했다면 그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먼저 승인을 받고, 환경청과 그 시설이 위치해 있는 주의 감독과 이행을 받아야 한다. CERCLA에 따르는 대응조치를 수행하는 연방 자금은 의회의 책임 하에 운용된다.

유해물질의 유출에 관한 통보는 CERCLA에 따르는 연방 대응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승인한다. 제103(a)조항은 만약 유출의 양이 그 특정한 물질을 위해 설립된 규제 제한을 초과한다면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National Response Center에 통보하여야 한다.¹⁹⁸⁾ 이러한 제한은 연방 법규에 명시되어있는 ‘reportable quantities라고 간주한다.¹⁹⁹⁾ 주나 지방 공무원 혹은 유해물질의 유출을 관찰하거나 의심하는 일반인도 그 사건을 보고할 수 있다. 유출이 보고되면 the National Response

195) 42 U.S.C. § 9604(a).

196) 42 U.S.C. § 9615.

197) 행정명령 12580, superfund 이행, 1987년 1월 23일, 52 공보 2923. 이하에, CERCLA에 따르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환경청과 다른 연방기관에 위임된 것을 지칭한다.

198) 42 U.S.C. § 9603(a).

199) 40 C.F.R. § 302.4.

Center는 제104(a)조항에 따라서 대통령의 대응 당국을 수행하는 것과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맞설 필요가 있는 어느 연방 이행조치를 취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적절한 연방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

CERCLA에 따라서 취한 대응조치는 대개 잠재적 해로운 노출을 예방하는 방지, 제거, 혹은 환경오염의 치료를 포함하는 정화 행위를 수반하지만 만약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잠재적으로 노출된 개인의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재배치를 포함해도 된다. 의회는 다른 연방 환경법에 따라서 다루게 될 수도 있는 CERCLA의 대응 당국으로부터 환경오염의 특정 유형을 제외했다. 이러한 제외는 ‘유해물질’, ‘오염물질’, 그리고 ‘유출’을 포함하는 CERCLA의 대응 당국이 정하는 법에서 정한 정의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외뿐만 아니라 의회는 특정 상황에서의 유해물질, 오염물질의 유출을 다루기 위해 CERCLA에 따라서 대응 당국이 취해야하는 정도에 일반적인 제한을 두었다. 사실상 이러한 제외와 제한은 특정한 오염된 장소에서의 적용가능성이나 CERCLA의 대응 당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 대응조치의 범위

CERCLA는 대응조치의 2개의 유형을 승인했다: ‘제거’, ‘개선’ 조치이다. 이러한 용어는 CERCLA의 제101(23)조항²⁰⁰⁾과 제101(24)조항²⁰¹⁾에 각각 정의되어있다. 제거는 필연적으로 토양, 지표수나 지하수의 오염을 물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개선조치는 필연적으로 오염의 처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에 두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잠재적으로 노출된 개인의 재배치를 포함하여 오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포함한다. NCP는 제거조치가 비상사태를 다루기 위해 NPL이 아닌 장소에서 superfund 돈으로 비용을 마

200) 42 U.S.C. § 9601(23).

201) 42 U.S.C. § 9601(24).

련해야 되는 반면에, 개선조치는 NPL 목록에 작성된 장소에만 한해서 superfund 돈으로 비용을 마련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²⁰²⁾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가장 많은 위험을 야기한다고 간주되는 NPL 장소에서의 많은 돈이 드는 개선조치를 위한 superfund 돈을 비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법규에서의 자금 제한은 환경청이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염된 장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CERCLA 105(a)조항의 법이 정한 요건에 기초한다.

개선조치가 더 영구적인 해결을 제공하는 더 장기적인 조치인 반면에 제거조치는 더 당면한 위험을 다루는 단기 조치 경향이 있다. 개선조치는 종종 더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를 수반한다. 개선조치의 보통 더 큰 정도와 비용으로 인해 개선조치는 RI/FS의 형태로 더 깊이 있는 평가의 적용을 받는다. RI/FS는 노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오염의 조사와 그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개선 대안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개선조치는 또한 CERCLA의 117 조항에 따라서 대중 참여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²⁰³⁾ 제거조치는 더 당면한 위험을 다루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지된 필요성으로 인해 똑같은 정도의 평가나 대중의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04(c)(1)조항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황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superfund 돈으로 비용이 마련된 제거조치의 시점을 1년으로 비용은 \$2 백만으로 제한한다.²⁰⁴⁾ 예를 들어, 개선조치는 만약 제거조치의 지속이 그 장소에서 계획된 개선조치에 기여한다면 이러한 제한을 초과해도 된다. 개선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점과 비용 제한의 목적은 제거조치가 요구받는 더 깊이 있는 평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더 넓은 규모로 추구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202) 40 C.F.R. § 300.425(b)(1).

203) 42 U.S.C. § 9617.

204) 42 U.S.C. § 9604(c)(1).

하지만, CERCLA는 이러한 제한을 책임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돈으로 비용을 마련한 제거조치와 superfund 이외의 목적으로 책정된 연방 시설 전용 자금에서 연방기관에 의해 비용이 마련된 제거조치에 제한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화 도전이 비연방 장소와 비교할 때 연방 시설에서 더 크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와 미국에너지부에 의해 운영된 많은 연방 시설에서의 제거조치에 위에서 언급된 시점과 비용의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제거조치의 필요한 범위를 강제할 수 있다.

(3) 연방-주 비용분담

CERCLA의 제104(c)(3)조항은 그러한 조치에 자금을 대기 위하여 연방 superfund 돈을 강요하는 조건으로서 비연방 NPL 장소가 위치한 주가 그 장소에서 개선조치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합의하도록 요구한다.²⁰⁵⁾ 주는 연방시설을 운영하는 연방 기관이 자금을 대는 연방 시설을 포함하여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가 정화를 위한 돈을 지불하는 장소에서의 정화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에, 연방정부와 주는 정화비용을 추구하는 가능한 당사자들이 없을 때 정화비용의 orphan shares를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제104(c)(3)조항의 이러한 비용분담 요건의 목적은 개선조치를 수행하는 것에 참여하는 장기적인 재정투입을 나타내는 연방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특히, CERCLA은 주가 적은 범위로 인해 보통 돈이 덜 드는 제거조치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합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 superfund 돈은 제거조치의 전체 비용의 자금을 대는 것에 사용된다.

205) 42 U.S.C. § 9604(c)(3).

주가 연방 superfund 돈의 의무 조건으로서 제거조치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에 합의해야 하는 장소에서 주는 먼저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연방정부와의 협력계약에 명시된 재정투입의 특정 보증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계약이나 합의가 없을 때, 연방 superfund 돈은 그 장소에서의 개선조치를 하는 것에 자금을 댈 수 없다. 연방 superfund 돈의 의무가 개선조치를 시작하도록 하려면 주가 그러한 조치 비용의 10%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만약 그 장소가 처분 시점에서 주나 주의 정당에 의해 소유되었거나 운영되었으면, 주는 개선조치 비용의 적어도 50%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조건들뿐만 아니라 주는 기대수명을 위해 개선조치의 장래 유지를 수행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 유지는 대개 필연적인 건설이 끝나거나 개선조치가 의도한대로 운영된 이후에 발생한다. CERCLA는 지하수나 지표수 개선의 유지를 위한 주의 책임을 지체하는 것을 승인한다. 104(c)(6)조항은 주가 그러한 개선조치 운영의 10년 동안은 유지책임을 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²⁰⁶⁾ 이 법률은 지하수나 지표수의 정화는 다른 유형의 개선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 특히 주에서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위한 유지책임을 지는 것의 지체를 허용한다. 10년동안 연방 superfund 돈은 대신에 지하수나 지표수를 개선하는 것의 유지비용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3. 금융당국의 책임

(1) 당사자 유형

CERCLA의 제107조항은 환경청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응조치의 비용에 책임을 지는 오염된 장소와 연

206) 42 U.S.C. § 9604(c)(6).

관된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의 유형을 식별한다.²⁰⁷⁾ 그러한 당사자들은 또한 그러한 피해, 파괴나 손실을 평가하는 것의 비용과 CERCLA 제104(i)조항에 따라서 ATSDR이 수행하는 공중보건평가의 비용을 포함하는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해 자연 자원의 피해로 인한 손해, 파괴나 손실에 책임을 진다. 이어지는 조항에서는 CERCLA의 제107조항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의 유형, 책임의 범위, 책임에 대한 방어, 특정 당사자들의 유형의 책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한다.

제107(a)조항은 대응조치, 자연 자원 손해, 그리고 유해물질의 유출이나 위협이 있는 유출의 비용과 관련있는 공중보건평가에 책임을 지는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4개의 유형을 식별한다:

- 유해물질이 유출된 시설이나 선박을 현재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
- 유해물질의 처분 시점에 그러한 처분이 발생한 시설을 소유했거나 운영했던 자;
- 유해물질의 처분이나 처리를 준비했던 자(폐기물의 배출자라고 일컬어지는)와, 유해물질을 처분하고 처리하기 위해 운반을 준비했던 자; 그리고
- 처분이나 처리 시설, 소각 선박이나 그러한 자에 의해 선정된 장소로 유해물질을 운송하거나 운송했던 자.²⁰⁸⁾

책임의 맥락에서, 유해물질이 환경을 통해 이동한다면(즉, 움직이게 하거나 퍼뜨리면), 정화비용을 위한 금융 책임은 시설의 경계를 넘어선 조치로 연장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CERCLA의 제101(8)조항은 땅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표수, 지하수나 대기도 포함하는 ‘환경’ 용어를 정의한다.²⁰⁹⁾ 따라서, 정화조치는 초기의 유출이 발생한 시설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환경을 통해 이동한 어느 곳에라도 필요

207) 42 U.S.C. § 9607.

208) 42 U.S.C. § 9607(a).

209) 42 U.S.C. § 9601(8).

하다. 예를 들어, 지하수나 지표수로 이동한 유해물질은 마일이라도 약간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유출이 처음 발생한 장소보다 더 큰 지역 쪽으로 정화조치를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2) 책임의 범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은 CERCLA의 107조항에 따라서 책임을 엄격하고, 연대 그리고 소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사법적 해석은 판례법, 입법상 기록, 그리고 the Clean Water Act의 제311조항과 똑같은 책임의 표준을 적용하는 CERCLA의 제101(32)조항²¹⁰⁾에서의 책임의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²¹¹⁾

- 엄격한 책임은 당사자의 행동이 태만했던 것과 상관없이 당사자는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 연대 책임은 오염에 참여한 정도와 상관없이 한명이나 한명 이상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그 장소에서의 정화의 전체비용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ERCLA의 제113(f)(1)조항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기여도 청구를 통해 그 장소에서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정화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허용한다.²¹²⁾ 그러한 청구를 결정할 때 법원은 정화비용의 할당의 근거를 ‘equitable factors’에 둔다. 당사자가 장소에 보내진 폐기물이 오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그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소급하는 책임은 당사자들이 1980년 12월 11일에 제정된 CERCLA 이전에 유출된 유해물질의 정화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107(f)(1)조항은 자연 자원에 대한 피해, 파괴, 손실을 초래

210) 42 U.S.C. § 9601(32).

211) 33 U.S.C. § 1321.

212) 42 U.S.C. § 9613(f)(1).

하는 CERCLA 제정 시나 후에 발생한 유출에만 해당되는 자연 자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연장한다.²¹³⁾

위에서 기술된 CERCLA의 기본적 책임 표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해석됨에 따라 단지 법률의 넓은 범위의 간단한 요약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별 법원 결정의 복잡성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1980년의 CERCLA 제정 이래로, 천개가 넘는 법원 결정은 정화비용에 대한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금융 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이러한 기본적 책임 표준을 해석해왔다.

CERCLA의 제107(b)조항은 특정 상황에 따라서 책임에 대한 항변을 규정하고 있다.²¹⁴⁾ 만약 당사자가 유출이나 위협이 되는 유출이 오로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면 당사자는 유해물질과 자연 자원에 대한 피해, 파괴나 손실의 유출이나 위협이 되는 유출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천재지변
- 전쟁
- 만약 피고가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의무를 행사했거나 제3자의 예상되는 작위나 부작위와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대비했을 때, 피고가 계약관계를 가지지 않은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 혹은
- 이러한 3가지 상황의 모든 조합

제3자의 방어는 때때로 재산 소유자가 오염을 초래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결백한' 토지소유자 방어로서 특징지어진다. CERCLA의 제101(35)조항은 계약관계 용어를 제3자 방어의

213) 42 U.S.C. § 9607(f)(1).

214) 42 U.S.C. § 9607(b).

목적으로 정의하고, 토지소유자가 소유자와 오염을 관련시키는 계약 관계가 부족한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야하는 조건을 명시한다.²¹⁵⁾

(3) 책임의 제한

CERCLA의 책임 계획의 공정성을 다루기 위해 의회는 오염을 초래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특정 유형의 당사자들, 오염 장소에 소량이나 적은 독성 폐기물을 배출했었을 수도 있는 당사자들이나 의회가 당사자들의 행동을 막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하도록 여러 경우에 법률을 개정했다. 당사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단지 오염 장소를 정화시키는 일을 수행하지만 오염을 야기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은 대응조치 계약당사자;
- 파산, 체납, 포기나 기타 상황을 통해 본의 아니게 오염된 재산을 획득했지만 오염을 야기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주와 지방정부;
- 수탁능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오염된 재산을 보유한 사람;
- 압류를 통해 오염된 재산의 금융이자나 소유권을 획득한 금융대출 기관;
- 재활용을 위한, 그러나 대신 다른 사람에 의해 처분된 폐품 물질의 배출자나 운반자;
- 장소에 소량의 폐기물이나 도시폐기물(즉, 무해한)만을 배출했던 사람;
- 유해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활용된 석유만을 처분했고, 재활용된 석유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방 규제를 충분히 준수했던 주유소 딜러;

215) 42 U.S.C. § 9601(35).

- 위에 언급된 제3자 방어와 관련된, 오염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재산을 구입했던 “결백한” 토지소유자;
- 단지 초기 유출이 발생했던 인접한 재산으로부터의 이동을 통해 오염된 재산의 기타 “결백한” 소유자; 그리고
-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정화를 위한 잠재적 책임을 지는 것 때문에, 오염이 알려지거나 오염이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을 획득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는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

그러나 등록된 농약제품의²¹⁶⁾ 적절한 적용이나 유해물질의 연방이 허용한 유출과 같은 당사자가 책임의 적용을 따르지 않는 CERCLA에 식별된 특정 상황도 있다.²¹⁷⁾

4. 수탁자와 금융대출기관

the Asset Conservation, Lender Liability, and Deposit Insurance Protection Act of 1996(P.L. 104-208, Division A, Title II, Subtitle E of the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1997)은 다른 사람을 위해 수탁능력을 가진 상태에서의 시설이나 선박을 가진 사람의 책임을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보유했던 자산의 가격으로 제한하기 위해 CERCLA에 제107(n)조항을 추가했다.²¹⁸⁾ 만약 수탁자가 그러한 시설이나 선박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유출이나 위협되는 유출을 야기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았을 때, 책임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된다. 오염된 재산에 이자를 보유했던 수탁자는 CERCLA에 따르는 연대책임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채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P.L. 104-208은 또한 유해물질의 유출이나 위협되는 유출이 발생했던 시설이나 선박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로 담보권

216) 42 U.S.C. § 9607(i).

217) 42 U.S.C. § 9607(j).

218) 42 U.S.C. § 9607(n).

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의 표시를 가졌던 금융대출기관을 제외하기 위해 CERCLA의 101(20)조항에서의²¹⁹⁾ ‘소유자와 발생자’ 정의를 개정했다. 대출기관이 담보권 행사 이전에 시설이나 선박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만 대출기관은 이 밖의 담보권이 행사된 재산의 소유자나 발생자로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대출기관이 재산의 소유자가 되고, 결국 제107조항에 따라서 정화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 대출기관은 특히 담보권 행사에 이어서 오염된 재산의 정화를 위한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하여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1) 유해물질 Super Fund 신탁기금

CERCLA는 연방정부가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돈을 지불할 수 없거나, 식별될 수 없는 오염 장소의 정화 비용을 대도록 자금의 주체를 규정하기 위해 유해물질 superfund 신탁기금을 수립했다. 정화 비용의 이러한 “orphan shares”를 위한 금융 책임의 인수의 목적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불가피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수행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소의 정화를 위해 돈을 지불할 Superfund 신탁기금 돈의 가용성은 의회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일단 승인되면, 이 보고서의 ‘주의 참여’조항에서 논의되었듯이, 개선조치의 돈을 지불하기 위한 환경청의 superfund 프로그램에 따르는 superfund 돈의 가용성은 장소가 위치한 주와의 비용분담 합의를 필요로 한다.

① 조세당국

Superfund 신탁기금의 자금을 대기 위한 특수한 조세당국은 1995년 말에 만료되었다. 이 권한이 소멸되기 이전에, 유류, 화학적 공급원료(그리고 수입된 화학적 유도체), 그리고 법인 소득에 대한 3개의 전용 세금은 대부분의 superfund 신탁기금을 위한 수입을 제공했다. 미국 재

219) 42 U.S.C. § 9601(20).

무부의 일반기금으로부터의 수입은 또한 전용 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탁기금에 기여했지만, 1995년 말까지 전용 세금이 거두어졌던 동안에 이러한 일반세 수입은 신탁기금에 대한 전체 수입의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었다.

1980년에 원래 제정되었듯이 CERCLA의 211(a)조항은 유류와²²⁰⁾ 화학적 공급원료에 대해 superfund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하였다.²²¹⁾ The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의 515(a)조항은 수입된 화학적 유도체를 포함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된 화학적 공급원료에 대한 세금의 범위를 확장하였다.²²²⁾ 수입된 유도체에 과세하는 것의 목적은 화학적 공급원료의 해외의 제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의 잠재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5년 말 만기 이전에 유류에 대한 the superfund 특별소비세는 1배럴당 9.7센트였다. 화학적 공급원료와 수입된 화학적 유도체에 대한 the superfund 특별소비세는 물질에 따라서 1톤당 \$0.22에서 1톤당 \$4.87로 다양했다 (1992년까지 세금의 초기년도에 1톤당 최고 비율인 \$10.13으로 과세된 크실렌을 제외). The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의 516(a)조항은 the superfund 신탁기금에 추가적인 세입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 소득에 특별세를 수립하였다.²²³⁾ 1995년 만기 이전에 법인 소득에 대한 the superfund 세금(공식적으로 법인환경소득세라고 함)은 \$2백만을 초과하여 법인 최저세 과세소득의 0.12%였다.

조세당국이 1995년 말에 차츰 약해진 이래로, superfund 세금을 회복시킬지는 오랫동안에 걸친 논쟁이었다. 의회는 세금을 재승인하기 위해 수많은 법안을 고려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법안도 제정되지 않았다. 재승인 논쟁은 수많은 ‘공정성’ 쟁점에 중점을 두었다. 세금의 지지자

220) 26 U.S.C. § 4611.

221) 26 U.S.C. § 4661.

222) 26 U.S.C. § 4671.

223) 26 U.S.C. § 59A.

는 superfund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세금 수입은 오염자가 그들이 야기했거나 장래에 야기할 오염의 정화에 대한 돈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것,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는 superfund 세금을 기업이 파산하거나 책임을 위해 기업이 추구될 수 없을 경우에 정화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공중을 위한 ”의료 보험“으로 특징지었다. 반면에 superfund 세金的 반대자는 세金的 영향을 받는 모든 개별 기업이 오염을 초래했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실제 오염자가 CERCLA의 책임 조문에 따르는 시행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superfund 장소의 정화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Superfund 세금이 ‘결백한’ 기업에 영향을 미쳤던 정도는 조세구조의 공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주요한 문제이다. 법인 소득에 대한 superfund 세金的 목적은 어떤 점에서는 유해물질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했거나 처분했는지와 상관없이 이 소득세는 소득 상한선을 충족시켰던 모든 기업을 포착했다. 의회는 미국에서의 많은 환경오염이 이러한 물질을 포함했던 산업 활동의 결과로서 야기되었다고 광범위하게 간주되는 가정에 기초하여 유류와 화학적 공급 원료에 대해 the superfund 세금을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유류와 화학 회사가 오염을 초래했던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유류에 대한 Superfund 세金的 적절성은 특히 CERCLA의 정화 당국으로부터의 유류 제외에 비추어 논란이 많았다. 이 때문에, Superfund 신탁기금의 돈은 만약 오염이 유류 제품 자체의 일부분이 아닌 유해물질을 포함할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유류 오염의 정화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 의회는 유류의 유출을 다루기 위해 기타 신탁기금을 수립하였다. The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of 1986의 주제 V은 지하 탱크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돈을 지불하기 위

해 누설 지하 저장탱크 신탁기금을 만들었다.²²⁴⁾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6 (P.L. 99-509)의 주제 VIII은 유류의 지표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돈을 지불하기 위해 기름 유출 책임 신탁기금을 만들었다.²²⁵⁾

Superfund 조세당국이 1995년 말에 차츰 약해진 이래로 오염을 야기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여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이나 어떤 점에서는 오염을 초래했던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았던 납세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오염 장소의 정화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대는지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지속되었다.

② Super Fund 재원

The superfund 세금을 거두는 권한이 만료된 이후에, superfund 신탁기금을 위한 돈의 주요한 출처로서 수입을 미국 재무부의 일반기금에 남기면서 이러한 세금으로부터 오는 남아있는 수입은 2003년 회계연도 말까지 쓰여졌다. 비록 Superfund 세금이 만료되었으나 산업은 일반기금에 기여하는 법인소득세를 통해 신탁기금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제공했다(일반기금에 대한 수입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와, 잡다한 연방 수입과, 특정한 연방 신탁기금에 전용되지 않는 모금으로 이루어짐).

일반 재무부 수입뿐만 아니라 돈의 다른 출처가 계속해서 일부 수입을 의회에 의한 책정을 위한 superfund 신탁기금에 기여했다. 나중에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되찾는 연방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정

224) 26 U.S.C. § 9508. 누설 지하 저장탱크 신탁기금에 대해 논의를 하려면, CRS 보고서 RS21201, *누설 지하 저장탱크 (USTs): 예방과 정화*, by Mary Tiemann을 보아라.

225) 26 U.S.C. § 9509. 기름유출책임 신탁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CRS 보고서 RL33705, *미국 연안 해역에서의 기름 유출: 배경과 거버넌스*, by Johathan L. Ramseur을 보아라.

화 비용은 신탁기금에 예치된다(원가회수). 이렇게 되찾은 자금은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지불할 수 없거나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찾을 수 없는 다른 장소의 정화를 위해 이용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CERCLA를 위반했는지를 평가한 벌금과 처벌은 또한 신탁기금에 예치된다. 이자도 신탁기금잔고에 누적된다. 총괄하여 이러한 돈은 환경청의 superfund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신탁기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연례 재량 책정을 지원하는 일반 재무부 수입의 양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돈의 이러한 출처는 신탁기금의 자금을 대는 것을 계속해서 돕고, 어느 정도까지는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찾을 수 없거나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지불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반 재무부 수입을 위한 필요를 줄일 수 있다.

③ 특별회계기금

비공식결제자금은 Superfund 신탁기금 돈의 추가적인 출처였다. 1986년에 개정되었듯이, CERCLA의 제122(b)(3)조항은 EPA가 그 당사자들이 책임이 있는 장소에서의 정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서 비공식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보유하도록 승인한다.²²⁶⁾ 이러한 비공식결제자금은 합의서에 따라서 다루어지는 장소의 정화에 전용하는 Superfund 신탁기금 내의 특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 특별회계에 예치된다. 환경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공식결제자금으로 거의 \$40억을 받았고, 1990년 회계연도에 처음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Superfund 특별회계 1000이상에 이러한 자금을 예치했다.²²⁷⁾ 이러한 자금은 환경청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회에

226) 42 U.S.C. § 9622(b)(3).

227) Superfund 특별회계의 사용과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배경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EPA의 Office of Enforcement and Compliance Assurance 웹사이트를 보아라:
<http://www.epa.gov/oecaerth/cleanup/superfund/spec-acct.html>.

의한 재량 책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단 모든 장소에서의 계획된 장래의 업무가 완료되면 환경청은 특별회계에 의해 다루어지는 장소에서 쓰였을 모든 책정된 자금을 대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장소에서 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의무를 위해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잔고를 재분류해도 된다. 다른 경우에는 환경청이 특별회계의 남아있는 잔고를 의회에 의한 차후의 책정을 필요로 하는 Superfund 신탁기금의 일반적인 부분으로 옮기기도 한다.

(2) 시행방법

만약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식별할 수 있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CERCLA에 따라 정화 책임을 시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법이나 행정명령, 원가회수 조치와 자발적으로 체결된 합의를 포함한다. CERCLA의 대응 당국과 같이 이러한 시행 당국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 보고서 앞부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1987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대응 당국을 CERCLA에 따라 환경청과 다른 연방기관에게 위임했다. 이 명령은 또한 육지 장소에서의 법률의 시행은 환경청에게 위임했고, 내륙에 있는 항만과 항구, 호수와 미국 연안 해역에서의 법률의 시행은 미국 해안경비병에게 위임하였다. 환경청의 시행 당국에 관한 이 보고서의 증빙서류는 미국 해안경비병에게 이들의 위임된 관할구역 내에서 균등하게 적용한다. CERCLA는 또한 CERCLA의 정화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시민 소송을 승인하지만 해당되는 요건의 준수가 이의를 제기 받기 전에 정화조치가 먼저 완료되어야 한다. 각각의 이러한 시행 방법은 아래에서 논의된다.

① 사법이나 행정명령

CERCLA의 제106(a)조항은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가 유해물질의 실제나 위협되는 유출로 인해 ‘공중보건이나 복지나 환경에 당면하고 상당한 위험에 빠진 상태’를 다루기 위한 정화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환경청이 행정명령을 발표하거나 법무부를 통해 사법명령을 추구하도록 승인한다.²²⁸⁾ 제106(b)(1)조항은 정화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하루에 \$25,0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²²⁹⁾ CERCLA의 제107(c)(3)조항은 또한 정화 명령에 따르지 않은 당사자가 그가 수행하지 않았던 정화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Superfund 신탁기금에 의해서 미국이 발생시킨 비용의 3배까지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책임지도록 허용한다.²³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 미국에 의해 받은 돈은 신탁기금에 예치되며, 의회에 의한 책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장소의 정화를 위한 자금을 대는 것을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만약 106조항 명령을 받거나 준수하는 당사자가 CERCLA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106조항 명령에 따르는 환경청에 의해 요구되는 정화조치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웠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제 106(b)(2)조항은 당사자가 Superfund 신탁기금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다.²³¹⁾ 이 조문의 목적은 그 당사자에게 부적절하게 부과된 시행조치의 비용으로부터 결백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책임있는 당사자가 더 엄격한 정화의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228) 42 U.S.C. § 9606(a).

229) 42 U.S.C. § 9606(b)(1).

230) 42 U.S.C. § 9607(c)(3).

231) 42 U.S.C. § 9606(b)(2).

② 원가회수 조치

어떤 장소에서는, 만약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아직 식별되지 않았거나 정화 명령이나 식별된 당사자들과 체결된 합의서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을 때, 환경청이 Superfund 정화를 착수하기 위해 신탁기금 돈을 선불로 써도 된다. 환경청이 Superfund 돈을 장소에서 실행가능한 당사자들과 쓰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들과 체결한 행정적으로 체결된 합의서의 관점에서 배상이 포함되 된다. 환경청 또한 법무부와 함께 사법조치를 통해서 당사자들로부터 Superfund 돈의 구상할 수 있다.

CERCLA의 제107(a)조항은 그러한 조치가 NCP와 일관되지 않는 한 환경청이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로부터 Superfund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승인한다.²³²⁾ 그러한 조치가 NCP와 일관되는 한 정화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선택한 주와 인디언 부족과 모든 다른 사람은 또한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비용을 되찾아도 된다. CERCLA의 제104(i)조항에²³³⁾ 따라서 ATSDR에 의해 수행된 건강영향연구의 비용과 자연자원의 피해에 대한 손해, 파괴나, 손실은(그리고 그러한 피해, 파괴나, 손실의 평가) 또한 되찾을 수 있다.

CERCLA의 제113(g)(2)조항은 만약 회복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금융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원가회수 조치가 시작되었을 때의 시점을 제한한다.²³⁴⁾ 원가회수 조치는 일반적인 시간제한인 12개월을 넘어서 연장하도록 허용한 개선조치를 제외하고, 개선조치의 완료 이후에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너무 긴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12개월을 넘어서는 시간을 연장하도록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비용은 6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원가회수 조치는 개선조치의 실제적인 구성의 착수가

232) 42 U.S.C. § 9607(a).

233) 42 U.S.C. § 9604(i).

234) 42 U.S.C. § 9613(g)(2).

이루어진 후에 6년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보다 앞선 개선조치 완료 이후에 개선조치가 3년 내에 착수되면, 그 개선조치의 비용은 뒤따르는 개선조치 비용의 회복의 일부로서 구상할 수 있다.

③ 자발적으로 체결된 합의서

만약 잠재적으로 책임있는 당사자가 그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CERCLA의 제122조항은²³⁵⁾ 환경청에서 제106조항에 따라서 사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조치를 추구하고거나 제107조항에 따라서 원가회수 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대신에 그 당사자와 행정적으로 체결된 합의서에 들어갈 수 있는 재량을 준다. 자발적으로 체결된 합의서를 통해서 환경청에 의한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아마 그의 책임에 대해 합의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면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제122(f)조항은 환경청에게 연방정부가 책임을 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합의서에 이를 포함하는 재량을 허용한다.²³⁶⁾ 그러한 약속은 당사자에게 특정한 정화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의하거나 그의 책임에 대한 상한선을 교환으로 금전적 지불을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위에서 나온 ‘특별회계기금’조항에서 논의되었듯이, 제122(b)(3)조항은 환경청이 그 체결에 따라서 받은 자금을 보유하고, 체결의 기한을 이행하도록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²³⁷⁾ 장소에서 그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당사자는 또한 CERCLA의 제113(f)(2)조항에 따라서 그 장소에서 다른 당사자들에 의한 기여도 청구로부터 보호를 제공받는다.²³⁸⁾ 특히 만약 또 다른 당사자에 의한 기여도 청구가 당면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보호의 목적은 당사자에게

235) 42 U.S.C. § 9622.

236) 42 U.S.C. § 9622(f).

237) 42 U.S.C. § 9622(b)(3).

238) 42 U.S.C. § 9613(f)(2).

체결을 할 또 다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122조항에 따라서 환경청이 체결된 합의를 체결할 지는 잠재적으로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일단 완결되면 특정한 정화조치를 수행하거나 금전적인 지불을 할 합의서의 기한은 합의를 체결했던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만약 당사자가 합의한 정화조치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의한 정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CERCLA의 제109조항이 합의의 위반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벌금으로 하루에 \$25,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²³⁹⁾

제 5 절 기후변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내 금융관련 법제 분석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으로서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효율제고’라는 정책적 배경 하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처간 업무 중복의 조정과 지속적인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에서부터 세부수행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절약 부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원칙을 제공하는 입법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²⁴⁰⁾

239) 42 U.S.C. § 9609.

240) 박지은,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 법제학술논단, 2010. 7, 18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²⁴¹⁾

구분	내용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시책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과 지원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 공공기관이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 감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제4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설정 및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국제협상 및 경쟁력 고려

한편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해주는 녹색기업확인제도로 녹색산업에 관한 지원에 있어 보다 절차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²⁴²⁾

241) 배진기, 시동을 건 녹색금융과 향후 과제, The Banker, 2010. 8, 39면.

242) 배진기, 앞의 논문, 40면.

[녹색인증 추진현황(2012년 12월 19일 기준)]²⁴³⁾

구분	인증신청	인증확정
녹색기술인증	1,845	856
녹색사업인증	114	25
녹색전문기업	144	103
합계	2,103	984

(2)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녹색인증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비과세 녹색예금과 녹색대출 상품개발이 가능해져 녹색금융상품 개발과 운용에 따른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에 은행연합회에서는 2010년 6월 30일에 녹색금융의 가이드라인으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동 가이드라인에는 비과세 녹색상품 개발에 따른 고객보호와 녹색금융에 대한 프로세스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²⁴⁴⁾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상품개발 및 고객보호	제5조(녹색예금·녹색채권의 명칭) - 녹색예금·녹색채권 명칭에 ‘비과세 녹색금융’ 포함 제7조(설명 의무) - 녹색예금·녹색채권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비과세 요건·한도 등 중요사항 기재 및 고객 설명
녹색금융 프로세스 마련	제8조(녹색금융 관리체계) -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할 의사결정기구 설치 및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제11조·제12조(심사 및 절차, 환경리스크 분석)

243)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244) 배진기, 앞의 글, 41면.

구분	내용
	-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 여부 결정 시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리스크도 고려하여 분석 제13조(금리 및 수수료) - 금리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은행자산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 지원기준 마련 및 운용
녹색금융 리스크 관리	제16조(리스크 관리체계) - 리스크 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위험평가 및 관리 제18조(사후관리) - 녹색금융 지원 후 자금의 용도 외 유용여부 및 사업현황 파악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우리나라는 탄소감축 의무국이 아닌 자발적 감축체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하지만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화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비와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10위 안에 차지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은 시급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권 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²⁴⁵⁾ 이러한 탄소배출권을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

245) 정희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의 재조명, The Banker, 2011. 7, 60면.

[배출권거래법의 주요내용²⁴⁶⁾]

구분	주요 내용
도입 시기	- 2015년 1월 1일(1차 계획기간: 2015년~2017년, 2차 계획기간: 2018년~2020년, 3차 계획기간: 2021년~2025년)
적용 대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 적용받는 업체 중 탄소 배출량이 연평균 총량이 125,000 혹은 25,000 CO2-eq 이상인 업체 -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
관리 부서	-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가진 배출권 할당 위원회 설치(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방식	-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에 대한 유·무상 할당제 운영 - 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 -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은 97% 이하 - 3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은 90% 이하
	- 이산화탄소 1톤 단위로 배출권 매매 거래 허용 - 거래 안정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소 지정 및 설치 가능 - 거래와 관련된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준용
배출량의 보고/제출	-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배출량을 측정·보고하고, 배출량 인증 위원회에서 심의 - 인증 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서 제출하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허용하고 그 내역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 -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허용(별도의 상쇄 등록부에서 관리)
과징금	- 인증 받은 배출량 초과 시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지원 제도	- 탄소배출 감축설비 설치 및 기술 개발에 대해 금융·세제상 혜택 또는 보조금 지급

246) 정희수, 앞의 글, 61면.

(4) 현행 자본시장법상 탄소배출권의 지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는바(동법 제4조), 탄소배출권이 채무증권(동조 제3항) · 지분증권(동조 제4항) · 수익증권(동조 제5항) · 투자계약증권(동조 제6항) · 증권예탁증권(동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갖는 증권으로 탄소배출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동법은 “자연적 · 환경적 ·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동법 제4조 제10항 제5호), 탄소배출권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 있다.²⁴⁷⁾

2. 국내 환경금융의 현황 및 한계점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녹색성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 금융기관에서 녹색금융과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였다.²⁴⁸⁾ 이후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솔라파워론’ 등 녹색성장산업 관련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우리은행에서 ‘우리그린솔라론’ 등을

247) 김은정,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사법률연구 제60호, 2012. 10, 100면.

248)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삼성투신운용이 수익성과 환경보호의 결합, 환경 관련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적정 수익률 확보, 그리고 펀드를 통한 지속적인 환경 감시 역할 및 사회적 책임 제고라는 목표아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에코 펀드를 발매하였다.

출시하였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경제성·경쟁력 등의 미검증으로 인하여 여신 실적의 저조로 인하여 본 상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⁴⁹⁾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녹색성장·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2000년대 들어서야 이미 세계 주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제3세계 금융기관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던 UNEP FI에 조인하기 시작하였고, 이 뿐만 아니라 현재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Euqator Principle에 가입한 금융기관도 아직 없다고 한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2012년 배출권거래제법의 제정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금융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환경금융의 기능을 단순히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책 정도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환경리스크관리를 일반화하여 투자 결정 및 범위를 판단하는 주요국의 은행과 달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전혀 환경리스크에 관하여 진지한 위협 또는 기회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얼마 전 구미지역의 불산유출사건과 같은 큰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대응책으로서의 금융기관의 환경책임 부담에 대해 제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단지 지난 정부의 녹색 성장에 관한 정책과 법제 등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환경금융 관련 상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홍보적 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효과는 없으며, 환경금융 관련 펀드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실제 운용에 있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은 보다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²⁵⁰⁾

249) 장미화, 앞의 논문, 26면.

250) 2001년 우리나라 최초의 에코펀드가 출시된 이래 다수의 녹색금융 관련 펀드가 출시되었으며, 이에 환경, SRI 및 지배구조 관련 펀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홍정훈, 녹색금융의 전개 과정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KRX Market, 한국거래소, 2009, 43면).

3. 환경펀드

에너지 부문에 관한 헤지펀드가 2002년 엔론사태 이후 활성화 됨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환경과 관련된 헤지펀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탄소배출권으로부터 투자, 환경기업의 주식과 부채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과 청정에너지 또는 대안에너지주식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들 또한 헤지펀드의 형식으로 그 영역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헤지펀드들은 북아메리카에서 활발히 거래되어 왔으며, 그 중 대다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져왔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 급증에 따른 환경펀드 등의 상품 거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각광받고 있다.²⁵¹⁾ 이러한 환경펀드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이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되면서 이러한 환경펀드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되게 된 것이다.²⁵²⁾ 기후변화에 따른 이러한 변화들은 점차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에 대한 위기의식 증진 등의 새로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투자방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본다. 또 신흥개발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과 공급망에 대한 우려와 안정성의 측면에서 그 해결방안으로 투자와 거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펀드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일 뿐만 아니라 이익 창출을 통한 새로운 금융시장 활성화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251) 노희진 외 6인, 에너지·환경 헤지펀드, 자본시장연구원, 2010, 87면 참조.

252) 이러한 환경펀드 중 기후파생상품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의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안된 최초의 금융상품으로 1997년부터 미국 전력회사에 의해 도입된 기후 파생스왑이후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EU는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금융상품거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상품거래 헤지펀드 중 20개가 넘는 헤지펀드가 35개 지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개 주에서 발행하는 여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인증서가 존재한다.²⁵³⁾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기업의 여러 리스크 중 환경을 하나의 주된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이나 투자결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 부채와 기후변화 위험의 출현은 기업들이 시장개발에 앞장서는데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이와 동시에 주식 투자와 상품거래를 위한 새로운 금융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²⁵⁴⁾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고려한 금융거래는 환경을 기업의 중요 결정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금융거래를 통한 오염감소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황산가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의 11년 동안 성공적인 실행은 환경금융상품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환경금융거래는 금융시장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비용효과적인 방안 제시와 좀 더 환경친화적인 기술 출현의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²⁵⁵⁾

4.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개선방안

(1) 기존 환경금융상품의 한계

환경금융은 현 녹색산업의 개발 중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그 사업상 불확실성이 크며, 투자회수기간이 장기간이 걸려 그 활성화가 쉽지 않다. 또한,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

253) 노희진 외 6인, 앞의 보고서, 96면 참조.

254) 노희진 외 6인, 앞의 보고서, 91-92면 참조.

255) Id.

니즘만으로 충분한 투자자금을 유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에 재정을 통한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²⁵⁶⁾ 따라서 환경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차원에서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또 그 동안 사회적 압력 또한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 구축에 대한 노력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²⁵⁷⁾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친환경산업의 투자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초기 성장단계에서 고위험을 담보해 주는 사모펀드시장의 성장이 필요하며, 대체에너지 개발 등 벤처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상품의 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리스크 현황에 대한 감독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에서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현황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환경리스크관리감독에 관한 시스템의 도입은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도모하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⁵⁸⁾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반영한 포트폴리오의 재평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기혁신 및 브랜드 관리,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조 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⁵⁹⁾

256) 사회적 수익 > 사적수익 (기획재정부,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보도자료, 2009년).

257) 홍정훈, 앞의 보고서, 44-45면.

258) 홍정훈, 앞의 보고서, 45면.

259) 박영석,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기은연구, IBK경제연구

(3)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약 유도

녹색금융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UNEP FI 및 Euqator Principle 등 여러 가지 환경 관련 금융기관 협약이 존재하며, 주요국의 금융기관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극소수의 대형금융기관만이 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녹색금융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약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²⁶⁰⁾

(4) 민간 차원의 녹색 투자 유도

고위험·고수익인 녹색산업에 대한 시장성 우려, 은행의 위험자산 증가 부담 등으로 인한 소극적 여신 관행, 일부 대기업에 대한 투자 편중,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민간 차원의 녹색 투자는 현재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다수 배출되고, 불확실성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익성과 리스크 분석을 위한 금융기관의 정보·전문인력 확충 등 전문성 보안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²⁶¹⁾

소, 2009, 55면.

260) 홍정훈, 앞의 보고서, 45면.

261) 관계부처 합동,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 2010. 7. 13, 5면.

제 4 장 기후변화와 산업 활성화

제 1 절 서 론

1.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고, 그 문제는 다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결되어오고 있다. 물론 해당 문제가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술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가스의 배출에 따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하겠다. 과연 기후변화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라고 하겠다. 즉,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7. 4. 2. 선고된 판결에서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상의 대기오염물질이며 동법에 따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이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²⁶²⁾고 최종 판결하였다.²⁶³⁾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기인하여 미국은 소극적으로 기후협약에 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상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²⁶⁴⁾을 말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은 특정 집단이나 국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미래와 현 세대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⁶⁵⁾ 기후 변화가

262) Massachusetts v. EPA, 127 S.Ct. 1438 (2007).

263) 조홍식, 기후변화의 법정책, 월간 법제, 2010.7, 47-48면.

26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11호.

265) 김성배, 기후변화협약과 WTO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 2012,

가져오는 것은 인류의 환경의 변화라는 점이며, 환경의 변화는 인류의 존속 내지는 문화적 경제적 체계의 급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변화한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인류의 공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하겠다.²⁶⁶⁾

환경의 변화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의 선순환적인 이용이 아닌,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를 넘어선 것에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석탄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탄소(GHG)의 배출이라고 하겠다. 증기기관의 발전에 따른 산업화는 벌써 400여년의 산업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 기인한 환경의 변화는 일부 선진국의 산업화에서 대륙의 보편적인 산업화에 따라,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대륙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요인이지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도 과학기술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도할 수밖에 없으나, 반면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이용에 대해서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노력의 결과인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 및 후진국간의 기술에 관한 사항을 주된 논의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발전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극복해

91-92면.

266)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UN 체계의 세 가지 우선사안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대를 정의하는 해결과제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실 국가경제회의 과학기술정책국, 미국의 혁신을 위한 전략&UNEP 기후변화전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54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고있는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허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을 이용하여야 하지만 기술은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기술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환경문제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선진국이 자국에서 확보한 기술의 독점권에 따라 개도국 및 후진국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가?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오고 있으며, 기상이변은 자연적인 변화는 물론 유전적인 변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체적인 이슈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하여, 연쇄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후쿠시마의 지진에 따른 원전의 파괴에 따른 방사능의 유출이라고 하겠다. 방사능 유출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방사능은 해류, 기류를 통해서 지구 전역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로인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은 상당부분 특허제도를 통해서, 전세계적인 보호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강화되고 있는 특허제도의 유연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허제도 있어서,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발명특허는 자국의 보호범위를 넘어선 지구적인 보호범위를 선점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한 나라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드물 것으로 보나, 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개별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여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기술관련 지적재산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협약의 논의과정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은 기술이전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적재산권제도는 기술의 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고 있으나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꼭 그렇게 작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국제통상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더욱 자국의 통상이익을 위해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구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해차이가 작지 않고,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각국에서는 환경기술을 포함한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해 강제실시나 또는 기술이전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어떠한 방향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허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강제실시에 대한 TRIPs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국 전지구적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허제도가 갖는 기술독점에 대한 정책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WTO 체제 하에서 기후협약이 담아내는 몇 가지 의무사항은 WTO협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²⁶⁷⁾ 즉, 직접적인 무역제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

267) 김성배, 앞의 논문, 80면.

제도, 청정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국제 온실가스시장이 형성되므로 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협정에서의 특허제도의 유연화는 필요하나 단계적으로 특허제도의 개선이전에 공적개발원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적정 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기후변화의 국제적 대응

1. 기후변화협약의 이해

기후변화가 갖는 국제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은 1992년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하여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이후,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을 구체화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된다.

협약은 “협약이 규정하는 목적, 원칙, 이행사항 등에 대해 가입국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그 자체가 제도적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²⁶⁸⁾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기구는 당사국총회(COP)이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IPCC라는 사무국이 있다. COP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거나 관련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최고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²⁶⁹⁾

(1) 기본 원칙

기후협약은 기본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

268) 신의순 외,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 47면.

269) 신의순 외, 앞의 책, 47면.

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 내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⁷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약은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 (제 3조)으로 하며,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제 4조).

(2)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2012년 현재 옵저버를 포함하여 가입국은 19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 19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기후변화협약은 1)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여태껏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

270) 제2조 목적 이 협약과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모든 관련 법적문서의 궁극적 목적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 내에 달성되어야 한다.

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하에 당사국들을 부속서 I 국가와 부속서 II 국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속서 I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이었으나 이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2012년 현재는 러시아 연방과 발트 지역 및 여러 중동부 유럽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부속서 I 국가군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사국총회(COP3)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을 띠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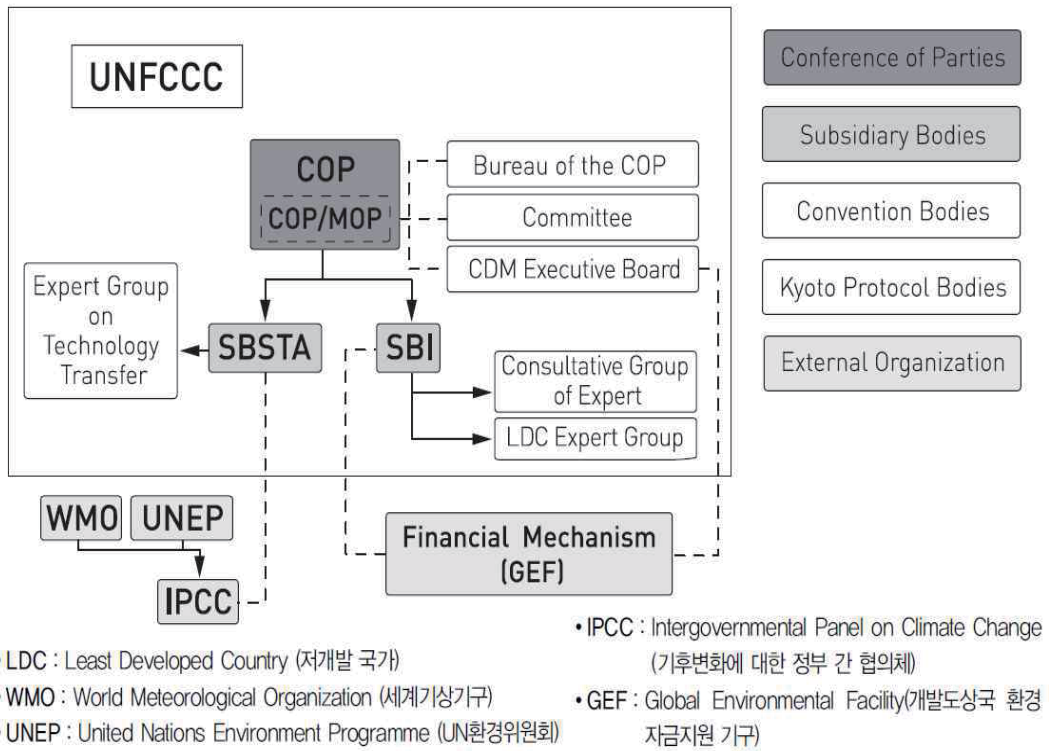
부속서 II 국가는 부속서 I 국가에서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이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 제출해야 한다. 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국(부속서 II 국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기타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인 의무만 수행하면 되지만 OECD 가입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발적으로 부속서 I 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의 실효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으로 정하였으며, 핵심 내용은 역시 1990년대와 같이 온실가스 평균량을 5퍼센트로 줄이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공방전만을 벌

일 뿐 큰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였다.

한편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 교토의정서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었다.²⁷¹⁾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2차 공약기간이 개시된다.²⁷²⁾

(3) 조직 구조도



271) 제18차 당사국총회, 카타르 도하, 2012.11, 5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문 (Doha Climate Gateway) 채택

- ①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
- ② 기후변화 대응 장기협력 협상트랙(AWG-LCA) 종료
- ③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논의 일정 합의
- ④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대응방안
- 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272)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3.9.19. 검색.

무엇보다도 당사국 총회(COP)는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사항과 제도적 장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²⁷³⁾ 당사국 총회는 협약의 최고기구로서 협약 및 당사국 총회가 채택하는 관련 법적문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권한의 범위 안에서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결정을 한다(제7조 제2항).

사무국과 부속기구는 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이 가능한 기구로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와 이행자문부속기구 등이 있다. 전자는 온실가스 배출목록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등 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후자는 재정기술 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COP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며, 다른 부속기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²⁷⁴⁾ 후자는 또한 당사국 총회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보조기관에 협약과 관련된 과학·기술문제에 관한 시의적절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을 이에 설치한다. 이 기관은 모든 당사국의 참여에 개방되며 여러 전문분야로 이루어진다. 이 기관은 유관 전문분야의 권한 있는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이 기관은 모든 작업 상황에 관하여 당사국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제9조 제1항).

(4) 녹색기후기금(GCF)

1) 협약상 기금관련 내용

기후협약은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무상 또는 양허성 조건의 재원제공을 위한 지원체제를 이에 규정한다. 이 지원체제는 협약에 관련되는 정책, 계획의 우선순위 및 자격기준을 결정하는 당사국 총회의 지침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총회에 책임을 진다. 그 운영은 하나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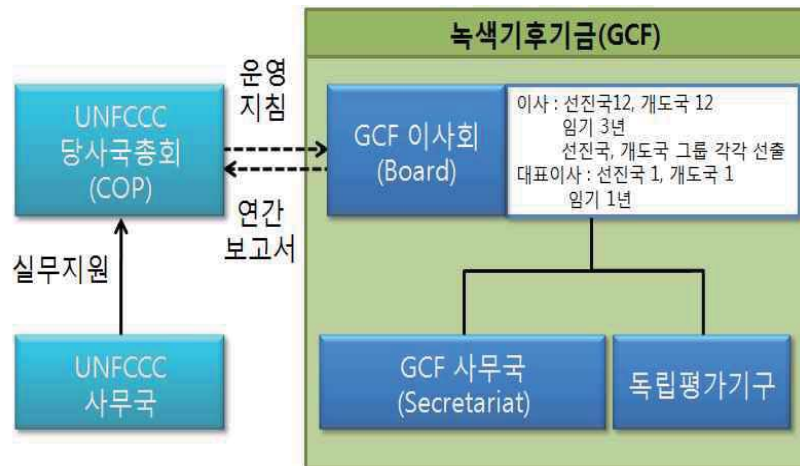
273) 신의순 외, 앞의 책, 48면.

274) 신의순 외, 앞의 책, 49면.

는 그 이상의 기존 국제기구에 위탁된다. 재정지원체제는 투명한 관리제도안에서 모든 당사자가 공평하고 균형있는 대표성을 갖는다. 당사국 총회와 재정지원체제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구는 상기 두 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요령에 합의한다.

- ①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재원제공사업이 당사자총회가 마련한 정책, 계획의 우선순위 및 자격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방식
- ② 특정 재원제공 결정을 이러한 정책, 계획의 우선순위 및 자격기준에 비추어 재심의하는 방식
- ③ 제1항에 규정된 책임요건과 부합하게, 운영을 맡은 기구가 재원제공활동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하는 것
- ④ 예측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협약이행에 필요한 이용가능한 재원제공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조건에 관해 결정하는 것
- ⑤ 당사자총회는 제21조 제3항에 언급된 임시조치를 검토, 심의하여 제1차 회기에서 상기 규정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임시조치의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그로부터 4년 이내에 당사자총회는 재정지원체제에 대해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선진국인 당사자는 또한 협약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양자적, 지역적 및 그 밖의 다자적 경로를 통하여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GCF(Green Climate Fund)



[GCF 구조도]²⁷⁵⁾

GCF는 공공·민간부문에서 기금을 마련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이다. GCF는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제 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하고 2011년 12월 제17차 총회에서 GCF 설립에 합의하면서 탄생하게 됐다. 2012년 10월 20일 열린 2012년도 GCF 2차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송도가 독일 본과 경합을 벌인 끝에 GCF 입주 도시로 결정됐다.²⁷⁶⁾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기후협약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체제(Financial Mechanism)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IMF 또는 World Bank와 같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가 관련 업무의 위임을 위해 설립하는 운영기구(operating entity)라고 하겠다. 즉, 녹

275) 류환민,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윤석민의원 대표발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13.6, 24면.

276) 연합뉴스, 2013.10.17.일자.

색기후기금(GCF)은 국제조약(설립협정)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2011년 더반 기후변화 총회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고, 2012년 10월 제2차 GCF 이사회 결정과 동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인준으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우리나라 인천에 유치되었다.

3)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법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법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2012년 10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유치되었고, 동년 12월 제18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18) 당사국총회에서 인준됨에 따라, 녹색기후기금의 국제기구로서의 법적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제기구도시 지정 및 국가의 지원 등 제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백히 하여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⁷⁷⁾

그러나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결정에 따라 설립되어 국제기구로서 법인격 및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의 법적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녹색기후기금(GCF)은 이러한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과정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제17차) 결정으로, 녹색기후기금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유치국의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가능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측과 GCF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녹색기후기금(GCF)과 사무국을 유치한 대한민국 간에 체결할 ‘본부협정’에 GCF의 법적지위 부여 조항을 포함하기로 하고, 국내법을 제정하여 녹색기후기금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77) 류환민, 앞의 보고서, 1면.

제정안은 녹색기후기금(GCF)의 법적지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²⁷⁸⁾.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GCF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동법은 기후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금에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²⁷⁹⁾

2. 국제적 논의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 논의

이러한 논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러한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8년 논의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트립스의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환경기술(EST)에도 적용되어야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일정 요건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트립스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이를 둘러싼 관계국의 입장차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278) 참고로, 국회는 2012년 9월 27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대 한민국 인천 유치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주문에 “녹색기후기금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인격과 법인능력, 특권과 면책권이 가능하도록 행정부가 법적 틀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결의한 바 있음.

279) 제2조(법적 능력) 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② 기금은 제1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토의정서

1) 연 혁

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의 연장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정식 명칭은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거나(배출권 거래제),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²⁸⁰⁾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²⁸¹⁾

280) 신의순 외, 앞의 책, 171면.

281)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대하다 2001년 탈퇴를 선언, 이후 러시아가 2004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55개국 이상 서명해야 한다는 발효요건이 충족돼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2) 감축대상 및 그 정도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₆) 등의 여섯 가지이다.²⁸²⁾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²⁸³⁾

282) 신의순 외, 앞의 책, 32면.

283)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2013.10.21.일 검색.

3)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중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이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주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에 대한 효율적 이행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이 서로의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다른 나라에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해당국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신축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대신 러시아가 2004년 10월 22일 하원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상원과 푸틴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11월 18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표되었다.²⁸⁴⁾

- ①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 또는 미달 여부에 따라 감축쿼터를 다른 나라에 팔거나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제17조)

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284) 신의순 외, 앞의 책, 171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⁸⁵⁾

가. 장 점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 배출총량을 정해야만 배출권 거래가 됨으로써 배출량의 직접적 관리 가능, 배출권 판매 및 구입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높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장점 보유

나. 단 점

반면, 감시, 행정 및 거래비용이 크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정 환경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단점도 존재

②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제6조)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비부속서(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285) 수석전문위원,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 관련 제정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2009.4, 41면.

- ③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제도(제12조)

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I국가) 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인 사업 추진절차가 마련되어, 2005년 1월 현재 1개의 대규모 매립지가스 자원화사업과 1개의 소규모 수력발전 사업이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19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4) 교토의정서의 연장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 각국 대표단은 2012년 말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더반 결정문 (Durban Outcome)’을 채택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시한이 만료되지만 2차 공약기간(2013~17)을 설정해 2013년부터 최소한 5년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유지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서 빠졌던 국가들도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의정서를 2020년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캐나다가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된 다음날인 2011년 12월 12일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하였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당사국이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12년까지 배출량을 6% 감축해야 하지만 2009년까지 배출량이 오히려 17% 늘어 140억 달러(약 16조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오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만료될 예정이었던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주요 의무감축 대상국인 일본·러시아·뉴질랜드·캐나다 등은 합의를 거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1·3위인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없고, 2위인 미국은 2001년부터 경제적 이유와 자국법상 문제를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어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⁸⁶⁾

한편, 2002년 비준한 한국은 19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무가 유예된 상태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지만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30%를 감축하기로 선언하여 자발적 감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86) 본 당사국 총회에 대해 “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와 2020년 이전 감축상향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2015년 5월까지 협상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차 연장 기간에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 효력 연장은 상징적 체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서울신문, 2012. 12. 10일자.

(2) 코펜하겐 논의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국제연합(UN)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등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연합(UN)은 매년 말 대륙별로 돌아가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연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된 UN기후변화회의를 말한다. 교토의정서는 이에 앞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가간 합의서이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는 미국, 프랑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세계 124개국 정상들 비롯해 193개국 정부 대표단과 언론, 시민단체(NGO) 관계자 등 3만 1,6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코펜하겐 합의문’이 도출됐는데, 주요 내용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2010년 1월 말까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가 맞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3) 발리 행동계획의 합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계획이나 일정의 구상도. 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발리 로드맵에 따르면 새 기후변화협약은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결정, 2013년 발효된다. 온실가스의 감소는 선진

국은 수치화된 목표 없이 ‘상당히 감축(Deep cuts)한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측정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서의 감축을 촉구한다. 또한 발리로드맵은 열대우림의 개간을 줄이는 개도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하는 개도국에 선진국 기술 이전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리로드맵으로 미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협상규칙 2007년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상세 협상규칙을 말한다. 발리로드맵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돼, 각 나라들이 자국 실정에 맞게 ‘측정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WTO TRIPs 등 통상 협정

(1) WTO TRIPs

지구의 환경문제는 결국 상품의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작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적시하여,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국제교역을 해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통상협정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등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나 제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WTO 설립협정문은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

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그중 최빈 개도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자기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인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따라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과거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 및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존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을 보존하고 목적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만 협정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RIPs에 따른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해석이나 정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FTA

적어도 최근 체결된 한미FTA에서는 기후변화 내지 기술이전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우리나라의 대응

(1)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비부속서 I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8년도 기준 세계 10위이며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로서 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분야별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을 BAU대비 30% 줄일 것을 선언한 바 있다.

(2) 기후변화 대응사업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0% 저감²⁸⁷⁾)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절약목표,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청정개발체제사업 운영

청정개발체제사업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승인하는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우리나라에는 2004년 6월 설치되었고 2011년 9월 기준으로 63건의 CDM사업이 등록되어 있다.

28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3)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제도로써 배출권 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정·공포되어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동법의 입법목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에서 말하는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935호, 2010. 12. 31.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한국환경공단, 2012. 12)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5) 전문인력 양성

- 기후변화²⁸⁸⁾ 특성화 대학원 지원

288)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
- 저탄소²⁸⁹⁾ 그린캠퍼스 지원

6)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 중인 지자체에 속한 개인 및 세대주, 시설소유자, 전기·수도요금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아파트세대 등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²⁹⁰⁾

제 3 절 환경 기술개발의 확대와 법적 지원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1. 입법 논의

우리나라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안의 발의된 바 있다.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3건의 의원안과 정부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입법은 다음과 같은 추진배경을 갖는다.²⁹¹⁾

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8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탄소에 대한 정의를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하고있다.

290) 탄소포인트는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계수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감축된 이산화탄소 일정량에 대한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네이버 두산백과, 2013.10.21.일 검색).

291) 수석전문위원,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 관련 제정 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Post-2012 체제)에서의 우리의 감축의무 부담 가능성,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입법 본격화 및 녹색산업 투자 강화 추세 등을 그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대상국인 선진 38개국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1차 감축에 돌입한 상황임. 2007년 12월 「발리로드맵」 채택 이후 Post-2012 체제에 대한 협상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임. 세계 10위권의 탄소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Post-2012 체제 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축부담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음. 2008년 12월 유럽연합(EU)에서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줄이겠다는 20-20-20 기후에너지 통합법이 유럽의회를 통과함.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음. 오바마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카 개발 등에 향후 10년 이내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신에너지 정책을 발표함. 영국은 세계 최초로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한 기후변화법을 제정했음('08.11). 프랑스는 기후, 에너지, 녹색소비, 지속가능발전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그르넬 환경법 I을 제정('09.2)하고, 그르넬 환경법 II를 제정중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법이 없어 정부 내 범부처 대책수준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7년 기준으로 2.4%로 4.7%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고, 전반적으로 녹색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이러한 입법배경을 갖는 다양한 법안들은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입법화되었다.

고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2009.4, 2-3면.

2.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개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⁹²⁾ 또한, 동법의 “규제시스템은 목표관리제와 같은 행위수단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보조금 정책 및 조세정책을 이용하여 경제주체의 동기를 유발하게 하며,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의무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통해 녹색성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통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²⁹³⁾라고 한다.

(1) 기본 원칙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

-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 ②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92) 동법의 입법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오준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0, 220면 이하 참조.

293) 조홍식, 앞의 논문, 52면.

- ③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④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 ⑤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 ⑥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 ⑦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 ⑧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 ⑨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책무

실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영역은 국가나 회사를 넘어선 공동체 전

체의 구성원이 참가해야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 기업, 지자체 및 국민 개개인의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의 책무(제4조)

- 가.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외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라.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마.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책무(제6조)

가.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의 책무(제7조)

가.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나.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다.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1) 녹색기술 개발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나노

· 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제26조).

참고로, 녹색기술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

2)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1항).

-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3) 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①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을 추진해야 한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청정생산기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 환경설비기술

- 녹색제품의 생산기술
-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②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에 대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산업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산업기술분야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 포함)을 추진할 수 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항).

- 가.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 포함) 기술
- 나.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 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 라.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 마.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 바.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민·군겸용기술
- 사. 디자인·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 아.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 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 카.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 타. (가)부터 (차)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 파.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3) 녹색기술 R&D 사업 확대 등

① 기술융합 촉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저탄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26조제2항). 아울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기술융합 촉진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3항).

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국가표준기본법」 제 30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6항).

- 가.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 평가 업무
- 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및 표준화사업
- 다. 기술규제의 대응 및 기술·경영요소에 대한 진단·조사·심사, 평가 업무
- 라. 녹색제품 및 녹색기술의 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 마. 국내 산업체에 대한 기술혁신지원, 기술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사업
- 바. 가부터 마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상호인정 포함)

사. 그 밖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부터 6.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포함)

③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특허청장은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특허법 제61조 제2호 및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특허청장은 녹색 융합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발명진흥법」 제25조 제1항).

녹색기술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하는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둔다(「발명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특허청장은 녹색기술 등에 대한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 등의 발명이 발명 사업화를 위해 지정된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32조).

(3)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1) 기본원칙(제38조)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 ②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 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③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 ④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 ⑤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한다.

2) 기본계획(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있어서,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 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다.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바.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사.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 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차.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평가 및 개정 논의

(1) 의의 및 한계

1) 의 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그 성격은 기후 및 환경, 에너지 관련 기본법제라고 할 수 있으며, 4개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으로 제정된 것이다. 녹색기술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후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다.

2) 한 계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 되도록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특허제도는 이미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기술이전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기후협약의 주된 논의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우리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강제실시가 가능하나, 실제 강제실시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구환경이라는 전지구적인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지적권 법제의 유연화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개정 논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기본법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본법은 해당 정책의 기본 원칙이나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녹색법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집행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64조에서는 과태료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으로서는 드물게 64조에 이르는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녹색법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는 기본법의 위상에 맞게 일부 집행적 성격의 규정은 개별법에 위임하거나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의 온실가스를 관리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42조의 조항도 구체적인 집행 프로세스를 기본법에 담기 보다는 온실가스 보고·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 신설토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56조의 생태관광 촉진에 관한 규정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기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²⁹⁴⁾

또한 총리실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 법에 상당수의 집행적 조항을 “정부는 ~할 수 있다(혹은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주관부처가 모호한 채로 입법이 완료된 측면이 있어 부처간 정책중복이나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일례로 25조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294) 맹학균,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정비, 월간 법제, 2010.7, 115면 참조.

기술지원,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관 부처를 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부처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법에서는 정책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개별법에 위임하거나 부처를 명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²⁹⁵⁾

제 4 절 기후변화 대응과 지적재산권 제도

1. 기후변화 대응과 특허권의 역할

기후변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이나 완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술은 발명특허로서 국가가 아닌 기업의 소유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 본 절에서는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을 중심으로 그 독점성에 따른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특허제도의 목적

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특허법상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특허권의 성격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특허청으로부터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은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이라고 하겠다(「특허법」 제94조).

295) 맹학균, 앞의 논문, 115면 참조.

또한 특허권은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산업상의 재산권으로 구성하여, 권리의 사용·수익·처분권능을 인정하고 있다.²⁹⁶⁾

특허권은 특허에 의한 기술의 독점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인 독점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불실시나 불성실한 실시의 경우에는 실시권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실시제도를 둠으로써 공익성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3) 공공복리를 위한 균형

1) 특허의 소극적 효력 제한

특허권이 독점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산업정책적 측면과 공공적 측면의 경우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 우리법은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가.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나.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다.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296) 이상정 외,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0, 86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강제실시권에 의한 제한

특허에 의한 독점권의 부여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있기 때문에 특허 발명을 실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시권을 허여하는 강제실시권제도가 채택되고 있다.²⁹⁷⁾ 우리 특허법은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에서 강제실시권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제실시는 정부에 의해 강제되어 사유재산이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제107조에 따른 재정에 의하여 강제실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강제실시권의 이전을 금

297) 이상정 외, 앞의 책, 93면.

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실시허락은 생산설비가 없다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²⁹⁸⁾

제107조에 따른 재정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되거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진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후협약에 따른 선진국 기술이전 논의²⁹⁹⁾

특허제도는 지금까지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나, 환경보로를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과학기술이 개발도상국 내지 후진국으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1) 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기술이전 논의 동향

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5항에서는 선진국(부속서 II 국가)의 특정의 무 중 하나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의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 즉, 부속서 2에 포함된, 선진국인 당사자와 그 밖의 선진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적절히 증진·촉진하며,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인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내생적 능력과 기술의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밖의 당사자와 기구도 이러한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98) 임병웅, 이지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887면.

299) 안미정 외,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간 기술이전에 대한 지재권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 연구, 특허청, 2009, 58면 이하 참조.

이에 따라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2001.7 독일 본)에서는 기술이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지구환경기금(GEF)을 통해 관할하고, 기금은 기후변화특별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 기타 국가의 자발적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제7차 당사국총회(2001.11 모로코 마라케시): 기후변화협약 4조 5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framework (technology transfer framework) 채택,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EGTT)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13차 당사국 총회(2007.12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여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및 재정, 기술이전 방안은 AWG-LCA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

(2) 기술이전 관련 AWG-LCA 회의 논의 동향³⁰⁰⁾

장기 협력 행동을 위한 특별작업반(AWG-LCA)에서는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논의 진행 중이며, 대체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 양상을 보인다. 지적재산권이 갖는 통상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이 강하다고 하겠다.

1) 개도국 입장

기술이전을 위한 재정체제 전체를 총괄하는 강력한 체계 신설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새로운 지원체제의 역할이 개도국의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자문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 수립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어야 한다는 것; 기존에 존재하는 관련 기금이 매우 부족하므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세계은행 등 UN 외부의 지원체제에 대해 기구 내에서 개도국의 발언권이 제안되어 있는 점을 들어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현재의 지적권 체계 하에서는 지적권 구입을 위하여 높은 비용을 치

300) SUMMARY OF THE BONN CLIMATE CHANGE TALKS: 10-14 AUGUST 2009.

려야 하는데 이는 기술이전에 장애로 작용하며, 따라서 지식재산권 체제를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R&D와 기술이전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선진국 정부가 공공 R&D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선진국 입장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경우,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비효율을 낳을 것을 우려하며 새로운 체계 설치보다는 기존 체계의 강화를 주장하며, UN 외부에 존재하는 각종 개발금융기구들의 재원과 양자간 지원을 통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재권 제도는 R&D 투자에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며 환경친화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므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과 민간의 R&D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기술이전 관련 지재권 제도 법적 쟁점

1) 신기술 분야의 강제실시제도 관한 국제적 동향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외에 실제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관점에서 강제실시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지재권 관점의 새로운 문제로 강제실시제도가 대두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간 입장차가 대립하고 있다고 하겠다.

① 개도국 입장: 선진국 보유 기술에 대한 지재권 개방 주장

개도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전은 저렴한 가격으로 환경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의 지재권 제도 하에서

는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권 이용에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는 기술이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내에서도 WTO/TRIPs의 의약품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주장된 것과 같은 논리로 환경기술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한 기술이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TRIPs 협정 31조는 생명, 안전 및 국방에 필요한 경우와 같은 긴급사태에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며, 기후변동은 위 긴급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환경기술은 적극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선진국 입장: 지적권 보호 주장

환경기술의 기술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적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개도국의 관세나 비관세장벽에 의한 것이다. 의약품과는 달리 친환경기술이 지적권의 경우가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know-how를 포함하고 있어 가격산정이 곤란하므로 기술 공여자와 수요자측의 기술이전 의지가 없으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권의 강제실시 조치는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오히려 기술보유기업이 당해 시장을 회피하는 행동을 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이 초창기이므로 산업 보호의 측면에서 동 분야에 강제실시권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3. 공익을 위한 권리의 제한 및 기술의 이전

(1) 기후변화 대응의 공익성

기후환경의 변화는 국제협약은 물론, 각국에서도 입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자연재

해가 작지 않을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후환경의 변화는 전지구적인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대응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사국 총회에서도 특허권의 실시를 통해서 독점권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술이전 및 강제실시권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인류 공동번영이라는 측면에서 TRIPs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후협약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도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헌법상 권리 제한 규정

우리 헌법은 제22조에서 발명자 등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특허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명특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허권도 재산권의 일종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법률로써 가능하다고 하겠다.

(3) 특허법상 권리 제한

특허법은 정부에 의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6조의 2).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정제도를 통해서 실시가 가능하기도 하다(제107조).

(4) 기술이전법상 기술이전

1) 대상 기술

공공복리를 위한 기술이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전법상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②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③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④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이전가능한 기술은 현존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적재산권법상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퍼블릭도메인화된 기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품의 경우에도 오픈소스의 철학이 반영된 경우도 있는 것처럼 기술도 그렇게 공유(公有)하는 것도 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기술의 이전

기술이전법상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독점권으로서 특허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 특허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양도를 포함하여 실시허락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실시허락을 받은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이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면 기술이전이 효과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3) 기술이전의 국제화

기술이전의 국제화는 우리 기술을 통한 국제협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겠다.³⁰¹⁾ 그렇지만, 기후변화를 위한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낸 것이라기보다는 국내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기술이전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기술중 정부에 의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공공기술의 이전

기술이전의 국제협력과 더불어 공공기술의 민간부분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경쟁법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분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301)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국제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²⁾ 그렇지만, 공공기술의 민간이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있어서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개도국에 기술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국제조약과의 관계

(1) WTO/TRIPs

1) 기술이전 관련 규정

TRIPs 제7조: 그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여야 함을 명시

① 기술이전

트립스 협정 제8조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제8조에서 1) 회원국

302)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자기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자기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허여된 권리의 예외

제30조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에서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기술협력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제67조는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회원국은 요청 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 회원국과 최빈 개도국 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은 지적재산권의 남용방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에 관한 법과 규정의 준비에 있어서의 지원을 포함하며, 인력의 훈련을 포함하여 동 사안과 관련된 국내기구 및 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복리 관련 내용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특별선언을 통해서 WTO 각료들은 기존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공중보

건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TRIPs 협정을 이행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 선언에서는 TRIPs는 회원국 정부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막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강제실시권과 같이 회원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TRIPs 협정의 유연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최빈 개도국을 위한 의약품 특허 보호의 예외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TRIPs 이사회의 추가 작업을 통해 국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들이 강제실시권 하에서 생산된 특허 보호되는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무면제(waiver)에 합의하였고, 2005년, 상기 의무면제의 시한을 2007년 12.1에서 2009년 말까지 연장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5. 공적개발원조와 지적재산권

(1) 공적개발원조

1972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이 채택한 “금융조건 개정 권고(Revised DAC Terms of Recommendation)”에 따르면, 공적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 - 증여(grants)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 또는 soft loans)으로 구분한다. 즉, 개발(developmental purposes)을 위한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의 양허적 조건(concessional terms)의 공공 이전(public transfer)을 ODA로 정의 -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국제협력”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협력분야를 경제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학술교류 등도 포함한다. 또한, OECD/DAC

는 “aid”라는 용어 대신에 “assis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aid”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완화- “assistance”에는 개발원조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조공여국과 원조수원국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에 기초한 상호적인 행위라는 의미 포함한다.³⁰³⁾

(2) 적정기술

기술혁신에 의한 실업의 발생이나 공해, 자원고갈 등 지금까지의 기술개발에 따른 마이너스 측면에 대한 반성에서 생겨난 사고방식. 해당지역에서 산출된 원재료를 써서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만들어 노동집약적이며 지역환경(자연조건, 사회제도)에 적합한 기술을 지향하는 것이 적정 기술의 특징이다. 경제학자 슈마하의 저서 「Small is Beautiful」이 단서가 되어 주목되었다. 개발도상국 대상의 기술이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방식이 되어 있다.³⁰⁴⁾ 적정기술이(Appropriate Technology)이란 한 공동체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을 말한다고 한다.³⁰⁵⁾ 적정기술은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적 특성, 경제의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제개념이라고 한다.³⁰⁶⁾

(3) 적정기술과 지적재산권

적정기술은 실제 그 이전을 통해서 공적개발원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퍼블릭도메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설령 그렇게 보호기간이

303) ODA와 유사한 개념으로 foreign assistance, economic assistance, economic aid, development aid, development cooperation 등도 사용하고 있으나, OECD/DAC은 ODA를 공식용어로 사용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13.10.21.일 검색).

304) 네이버 지식백과, 2013.10.21.일 검색.

305) 최승재, 적정기술과 개발원조(ODA),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3면.

306) 김찬중,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도국의 지역사회개발모델 발굴, 지식재산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12.

만료된 기술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라기 보다는 UN을 중심으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원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이 유효한 기술에 한정될 필요는 없겠지만, 기후협약에서 논의되는 주된 이슈 중 하나인 기술 이전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간의 논의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 본 제도는 기후협약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특허 기술이 적정기술로 사용되려면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해당 개도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특허를 포기하거나 또는 해당 개도국이 선정한 자에 대하여 무상의 전용실시권 등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정기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³⁰⁷⁾

6. 특허의 퍼블릭도메인화

공유라 함은 자신의 기술이나 발명특허를 공공의 영역에 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종의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으로써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기술적 사상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독점권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표현되어야 하며, 그 표현이 기존의 발명과 비교하였을 때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저작권법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모방금지권인 저작권과는 다른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오로지 특허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307) 육소영, 적정기술을 통한 공적개발원조, 지식재산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12, 39-40면.

과는 다른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의 형태인 특허권은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 또는 실시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그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3자가 권리를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³⁰⁸⁾ 특히, 보호기간이 만료된 특허는 누구나 실시가 가능한 공지공용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창작물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저작권법과는 다르게 퍼블릭도메인의 이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퍼블릭도메인화되는 시점이나 그 범위를 등록원부 및 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도메인에 대한 시스템으로써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특허법은 일정한 경우 당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취소라는 개념이 본래적인 특허의 취소라기보다는 잘못 부여된, 즉 퍼블릭도메인에 있을 특허를 사적재산의 영역인 특허권으로 보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퍼블릭도메인의 영역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자는 특허권 포기를 통하여 퍼블릭도메인화 할 수도 있다.³⁰⁹⁾ 이는 재산권에 대한 포기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특히, 특허는 등록원부가 존재하므로 포기등록이 권리관계의 공시가 되므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분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당해 특허는 국유화되고, 소멸된다.³¹⁰⁾

308) 송영식·이상정·황중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5, 59면.

309) 즉 특허권의 포기는 그 절차적인 규정은 없지만,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10) 특허법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이와 같이 당해 특허권은 퍼블릭도메인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허법상 퍼블릭도메인이 무엇보다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포섭되지 아니한 공지 및 공용의 기술에 대한 명확한 범위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지공용의 기술인 선행기술은 퍼블릭도메인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로써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특허권의 보호대상이었던 기술도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도메인의 영역으로 귀속되면,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용에 제한이 없어진다.³¹¹⁾

특허의 공유는 퍼블릭도메인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퍼블릭도메인이 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³¹²⁾ 이 때에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면 많은 사람이 기술개발이나 산업에 해당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허제도가 갖는 독점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소결론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기술 및 산업발전에 관하여 먼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국가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후협약의 경우 18차례에 이르는 당사국 총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교토의정서나 발리 협의와 같은 국제적 협약으로써 의미를 갖는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311) 김윤명, 퍼블릭도메인의 이해를 위한 개략적 고찰, 창작과권리 제49권, 2007, 163-164 참조.

312) 특허권이 만료되기 이전에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특허를 포기하거나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본다.

원인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상당한 차이와 또 현실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그동안 기후협약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정 국가는 이미 직접적인 피해로 입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기후변화에 대하여 각국은 자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특허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협약의 논의에서도 선진국의 환경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이 갖는 사유재산성과 자국의 기술보호라는 이유로 선진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협약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보된 환경관련 기술의 독점권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기술 자체는 기업의 사적 재산이라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이를 국가라도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 문제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독점적 성질을 갖는 특허권은 선후진국간의 기술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특허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권이 특허권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도 이를 강제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환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보호와 보존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같은 현상은 시간을 갖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예견할 수 없는 문제를 대

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지적재산권제도가 기후환경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각국은 특허제도의 간이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명특허의 보호주의적 성격으로 기술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발명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기술이전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법을 통해서, 아니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기후협약에 구체적으로 특허권 등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 형식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전과는 달리,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행정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은 기후협약의 구체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실행법률로서 의미와 함께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을 위한 산업발전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가 구성원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제 5 장 결 론

지난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모토 하에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이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였던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이나 기존 산업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성장을 위한 정책과 법제 구축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을 더한다면, 이는 보다 더 의미있고, 또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도 도입 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동 제도를 통하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발적인 인식과 노력은 기존 산업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시장창출과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나아가서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확산을 통하여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영향력과 위치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울러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식과 이에 대한 행위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대안이며, 향후 우리 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책임투자와 같은 투자대상 기업과 투자수준 결정에 있어 통상의 재무적 지표에 추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수준

까지 감안하는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는 미국의 경우 매우 활발히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에코펀드 발행 등 사회책임투자펀드 등을 개발하여 사회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를 고려한 금융제도들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포괄적 환경책임대응법에 따라 정해진 수퍼펀드에 관한 도입은 환경오염 등 피해 구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의무 부여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과 같은 일차적 책임제도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피해 사례의 경우 보다 실용성있는 제도가 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친환경기술사용과 개발 시 선진국의 특허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협약의 논의에서도 선진국의 환경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특허권이 갖는 사유재산성과 자국의 기술보호라는 이유로 선진국은 환경관련 기술의 독점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사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보존이라는 목적 앞에서도 이를 강제하기는 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그 사용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촌의 위기상황에서 지적재산권제도가 기후환경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유연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국은 특허제도의 간이화 및 조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내의 기업들은 1997년 IMF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의무적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하였고, 또한, 2005년 3월에는 정부와 재계 및 시민단체의 합의로 ‘반부패투명협약’을 발표하면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후 2007년 2월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기업 윤리경영 모델’을 제정하는 등 대기업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³¹³⁾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우리 기업, 금융, 산업 이 3박자가 함께 조화롭게 운용될 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또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심각한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 기업과 사회, 그리고 환경간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 가운데 함께 상생하며 또 성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환경에 대한 책임의 인식전환과 자율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구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본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창조적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13) 2004년 전경련이 100인의 CEO에게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가 CSR 이 기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답하였으며, 삼성, LG, SK,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은 이익공유 경영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참 고 문 헌

-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 ISO 26000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2011
- 곽관훈, 계속(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사법,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2011
- 곽관훈, 사회책임투자(SRI)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비교사법 제13권 2호 (통권33호), 2006
- 김성배, 기후변화협약과 WTO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 2012
- 김윤명, 퍼블릭도메인의 이해를 위한 개략적 고찰, 창작과권리 제49권, 2007
- 김은정,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0호, 2012
- 김정인, 일본의 배출권 제도와 녹색 금융의 현황, 2009
- 김찬중,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도국의 지역사회개발모델 발굴, 지식재산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 노한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동향 - 국제기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제3호, 2008
- 노희진,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자본시장연구원, 2010
- 노희진, 녹색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0
- 노희진 외 6인, 에너지·환경 헤지펀드, 자본시장연구원, 2010
- 류환민,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윤석민의원 대표발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13

참 고 문 헌

- 맹학균,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정비, 월간 법제, 2010
- 미국 대통령실 국가경제회의 과학기술정책국, 미국의 혁신을 위한 전략
& UNEP 기후변화전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 박영석,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기은연구, IBK
경제연구소, 2009
- 박지은,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 법제학술논단, 2010
- 배진기, 시동을 건 녹색금융과 향후 과제, The Banker, 2010
- 신의순 외,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집문당, 2005
- 안미정 외,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가간 기술이전에 대한 지적권 관점
에서의 대응방안 연구, 특허청, 2009
- 양만식, 사회적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기업법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 제41호)
- 연태훈, 최근의 사회책임투자(SRI) 동향과 시사점, 금융포커스 21권 9호,
한국금융연구원, 2012
- 육소영, 적정기술을 통한 공적개발원조, 지식재산정책,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2011. 이상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맥락에서 본 유노칼
판결의 의미, 법학논집 제31집 제2호, 2009
- 이상정 외,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0
- 이동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안암법학 제25집,
2007
- 임대웅 외, 녹색금융, 이팩스코리아, 2009
- 임병웅, 이지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 장덕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회사본질론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0

- 장미화, 한국·일본 은행들의 녹색금융 추진 비교와 시사점, 신한은행, 2009
- 정경영,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영리성의 조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III,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정희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녹색금융의 재조명, The Banker, 2011
- 조봉현, 중소기업의 녹색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금융연구, 2011
- 조홍식, 기후변화의 법정책, 월간 법제, 2010
- 최승재, 적정기술과 개발원조(ODA),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최준선, 기업의 부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2008
- 한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상사판례연구 제22호 제3권, 2009
- 한철, 연금기금과 사회책임투자(SRI)의 법리, 경영법률, 2010
- 홍정훈, 녹색금융의 전개 과정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KRX Market, 한국거래소, 2009
- Amiram Grill, Corporate Governance as Social Responsibility, 26 Berkeley J. Int'l L, 452, 2008
- Charles Hansen, A Guide to the ALI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1995
- Compare Henry Hansmann & Reinier Kraakman,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 89 Geo. L.J. 439, 2001
- David M. Bearden,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

참 고 문 헌

- tion, and Liability Act: A ummary of Superfund Cleanup Authorities and Related Provisions of the A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4, 2012
- Donald A. Carr & William L. Thomas, Devising a Compliance Strategy under the ISO 14000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15 Pace Env't. L. Rev. 85, 1997
- George Djurasovic, The Regulation of Socially Responsible Mutual Funds, 22 Iowa J. Corp. L. 257, 1997
- George Van Cleve, The Changing Intersection of Environmental Auditing, Environmental Law and Enforcement Policy, 12 Cardozo L. Rev. 1215, 1991,
- ISO, ISO26000 Social responsibility- ISO26000 project overview, 2010
-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2011
- Mark J. Loewenstein, Delaware As Demon. Twenty-Five Years After Professor Cary's Polemic, 71 U. Colo. L. Rev. 497, 2000
- Mitchell F. Crusto,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A Congressional-Driven Global Environmental, 11 Geo. Int'l Env't'l L. Rev. 499, 1999
- Mitchell F. Crusto, Green Business: Should we revoke corporate charters for environmental viloations?, Louisiana Law Review, 2003
- Robert B. Thomps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 Empirical Study, 76 Cornell L. Rev. 1036, 1991
- Russel Powell, "The Enron Trial Drama: A New Case for Stakeholder Theory" 38 U. Tol. L. Rev. 1088, 2007

經濟産業省, “企業の社会的責任(CSR)に関する座談會 中間報告書” 2004
全国銀行協会 「金融業における環境事業活動の現状と銀行に期待される
役割」, 2009